

## 제 출 문

### 해남군 신안공설묘지 재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해남군수 귀하

본 보고서를 『해남군 신안공설묘지 재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 11.

2017. 11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 김수봉(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심옥수(경북대학교 교수)  
신산철(늘푸른장사문화원 원장)  
연구보조원 : 조범훈(가톨릭관동대학교 연구원)  
권순만(가톨릭관동대학교 연구원)

## 【 목 차 】

제1장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2. 연구내용 및 범위 .....	3
제2장 공설묘지 재개발 .....	4
1. 공설묘지 재개발 .....	5
2. 공설묘지 재개발사업 .....	6
1) 기본구상 .....	6
2) 재개발 추진사업 .....	8
3) 기존묘지 이전 .....	9
3. 공설묘지 재개발 사례 .....	12
1) 광주시 중대공설묘지 .....	12
2) 여주시 본두리공동묘지 .....	15
제3장 신안공설묘지 재개발 .....	19
1. 신안공설묘지 개요 .....	20
2. 신안공설묘지 분묘조사 .....	22
1) 예비조사 .....	22
2) 조사실시 결과 .....	23
3. 신안공설묘지 재개발 타당성 .....	24

1) 법적·제도적 측면 .....	24
2) 도시재생적 측면 .....	25
3) 경제적 측면 .....	26
4) 재개발의 당위성 .....	27
제4장 신안공설묘지 재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	30
1. 공설묘지 재개발 주민욕구조사 .....	31
2. 신안공설묘지 재개발사업 방향 .....	36
3. 신안공설묘지 재개발사업 타당성 분석 .....	40
1) 재개발사업 추진절차 .....	40
2) 재개발사업 추진배경 .....	41
3) 재개발사업(안) .....	45
4) (가칭)해남문화복지센터 사업 타당성 분석 .....	48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67
1. 결론 .....	68
2. 정책제언 .....	69

## 【 표 목 차 】

<표 2-1> 경기도 광주시 중대공원 사업개요 .....	12
<표 2-2> 경기도 광주시 중대공원 조성사업 추진경위 .....	12
<표 2-3> 경기도 여주시 본두리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개요 .....	15
<표 2-4> 경기도 여주시 본두리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추진경위 .....	16
<표 3-1> 신안공설묘지 분묘조사 결과표 .....	22
<표 3-2> 신안공설묘지 인근지역 공시지가 .....	26
<표 3-3> 신안공설묘지 분묘 이전비용 .....	27
<표 3-4> 신안공설묘지 개발 전후 공시지가 비교 .....	27
<표 3-5> 신안공설묘지 재개발의 장점·단점 .....	29
<표 4-1> 재개발시 기존분묘 처리 .....	32
<표 4-2> 분묘개장시, 우선적 고려사항 .....	33
<표 4-3> 공설묘지 재개발 형태 .....	34
<표 4-4> 재개발후 장사시설 .....	35
<표 4-5> 화성시 나래울 복합복지타운 프로그램 내용 .....	39
<표 4-6> 전남지역 어린이집 유형 .....	41
<표 4-7> 해남군 어린이집 분포 .....	42
<표 4-8> 호남지역 청소년수련관 분포 .....	43
<표 4-9> 전남지역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	44
<표 4-10> 재개발사업 계획(안) .....	45
<표 4-11> 재무적 타당성 분석 판단 기준 .....	51

## 【 그림 목 차 】

- <표 4-12> 어린이 보육시설 보육료 수입 ..... 52
- <표 4-13> 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 53
- <표 4-14> 주민문화복지시설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 53
- <표 4-15> 식당수입 ..... 54
- <표 4-16> 전남지역 청소년수련관 재정수지 현황 ..... 54
- <표 4-17> 시설별 인건비 ..... 55
- <표 4-18> 업무추진비 지출 ..... 55
- <표 4-19> 프로그램 강사료 지출 ..... 56
- <표 4-20> 운영비 지출 ..... 56
- <표 4-21> 해남문화복지센터 재무적 타당성 분석결과 ..... 57
- <표 4-22> 해남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의 재무적 현금흐름 ..... 58
- <표 4-23> 경제적 타당성 분석 판단 기준 ..... 61
- <표 4-24> 어린이집 이용자의 편익 ..... 62
- <표 4-25> 노인여가활동에 따른 진료비 절감 편익 ..... 63
- <표 4-26> 노인여가활동에 따른 사망 감소 편익 ..... 63
- <표 4-27> 지불가능의사 금액 추정 ..... 64
- <표 4-28> 해남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총 경제적 가치 ..... 64
- <표 4-29>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연차별 경제적 가치 ..... 64
- <표 4-30> 해남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 전체 편익 ..... 65
- <표 4-31>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 65
- <표 4-32> 해남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의 경제적 흐름 ..... 65

- <그림 2-1> 공설묘지 재개발사업 추진과정 ..... 7
- <그림 2-2> 광주시 중대공원 재개발 사례 ..... 15
- <그림 2-3> 여주시 재개발 사례 ..... 18
- <그림 3-1> 해남군 신안공설묘지 위치도 ..... 21
- <그림 3-2> 해남군 신안공설묘지 전경 ..... 22
- <그림 3-3> 신안공설묘지 조사구역 ..... 23
- <그림 3-4> 묘지훼손 상태 ..... 24
- <그림 3-5> 공설묘지 인근지 공시지가 추이 ..... 26
- <그림 4-1> (가칭)해남문화복지센터 위치도 ..... 37

## 제1장 서론

###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범위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핵가족화·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의 인구구조 변화 및 화장률의 지속적 증가 등 장사수요의 변화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됨
  - 사회경제발전에 따른 의식구조가 변화하면서 장례문화의 방향도 전통적인 매장위주의 장례관행에서 벗어나 화장 후 봉안 또는 자연장으로 전환되고 있음
  - 기존의 매장문화로 인한 국토잡식과 자연훼손, 호화 불법묘지 설치로 인한 계층간 위화감 조성, 무연분묘 증가로 인한 기존 묘지 활용의 비효율성 대두 및 묘지비용의 상승 등 각종 사회적 폐해가 발생되고 있음
- 해남군 신안공설묘지의 주변 내 무분별한 묘지조성 및 만장으로 묘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점차 확대되고 있는 주도심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도 신안공설묘지의 재개발 타당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재개발은 물리적 정비 뿐 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는 종합적 측면에서 재개발을 의미함
  - 현재 조성중인 해남추모공원의 활성화 및 조기 정착을 위해서도 해남군 신안공설묘지의 재개발은 필연적임
  - 해남읍의 도심 팽창으로 인한 도시의 재생적 측면에서도 재개발이 필요함
- 신안공설묘지 재개발 추진에 앞서 공설묘지의 활용 가능성 및 방안을 검토해보고, 국토이용의 효율성, 친환경성, 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개발사업 계획 방향을 검토함

##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공간적 범위
  - 해남군 해남읍 신안리 공설묘지
- 내용적 범위
  - 신안공설묘지 분묘조사
  - 공설묘지 재개발에 따른 군민육구 설문조사
  - 해남군 공설묘지 재개발 타당성 및 재개발사업 검토
- 분묘조사
  - 분묘조사서 작성(유/무연고별 구분 대장포함)
  - 분묘별 지장물 조사작성
  - 묘지정비 사업비 산정
- 공설묘지 재개발에 따른 군민육구 설문조사
  - 공간적 지역에 대한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
  - 지역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재개발 계획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함
- 공설묘지 재개발사업 사례조사 및 시사점
  -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묘지이전 수립 방안 강구
- 해남군 신안공설묘지 재개발 타당성 평가 및 재개발 계획 방향 수립
  - 공설묘지 부지의 활용가능성 및 활용방안 검토
  - 재개발 타당성 검토
  - 재개발사업 방향 및 경제성 분석

## 제2장 공설묘지 재개발

- 
1. 공설묘지 재개발
  2. 공설묘지 재개발사업
  3. 공설묘지 재개발 사례

## 제2장 공설묘지 재개발

### 1. 공설묘지 재개발

#### □ 공설묘지 재개발의 의미

- 기존 묘지시설의 재개발은 묘지시설의 기능을 회복하고,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 묘지시설의 재개발은 노후, 불량한 기존의 묘지시설을 정비하는 도시계획 사업의 일종으로 접근하고 있음.
  - 장사(葬事)정책 분야에서는 기존 묘지시설의 재개발 사업을 보다 포괄적인 공원화 사업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재활용·재사용을 통해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유가족에게 경건한 장례의식을 편리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 한편, 현행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葬事法))에서는 묘지시설 재개발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으므로 묘지시설의 재개발에 대한 법적 개념 내지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사법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에 있어,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묘지, 화장장 및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 □ 재개발의 필요성

- 공설묘지 재개발은 일반적으로 기존 묘지시설을 재정비하여 장사시설로 부분적으로 재사용하는 경우와 도시개발 등으로 기존 시설을 완전 폐지하고 다른 용도지역으로 재사용하는 경우로 대별될 수 있음
- 전자는, 일반적으로 장사시설이 불충분한 경우 중장기 수급계획의 일환으로 기존 묘지시설을 자연친화적으로 재개발하여 공원화된 종합장사시설로 재활용하는 것임.
- 이러한 경우, 공설묘지 재개발 사업은 토지매입 비용의 절감, 국토의 효율적 이용도도, 님비현상의 최소화, 기존 시설의 환경정비 등의 장점이 있음.
- 또한, 공설묘지 재개발은 기존의 공설묘지시설을 현대화하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공간으로서 환경 친화적 시설로 새롭게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식전환과 새로운 장사문화를 이끌 수 있는 방안임.

- 그러나, 공설묘지 재개발과 신규부지 개발 간 절대적으로 우선순위를 둘 수 없으며, 기존 공설묘지 정비를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의 지지도 확보 차원에서는 공설묘지 재개발 방법이 상대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기존의 공설묘지를 다른 용도지역으로 재사용하는 경우는 주로 지역개발로 인해 도시개발구역으로 포함되는 경우와 공설묘지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어 이를 원 상태로 회복시켜 지역주민에게 환원시키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장사시설이 충분히 확충되어 있고 도심부근에 위치한 공설묘지의 경우에는 기존 묘지시설을 공원화하여 주민복지시설로 재활용함.

### 2. 공설묘지 재개발사업

#### 1) 기본구상

- 공설묘지의 재개발 기본구상은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기초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첫째, 전체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에 따라 기존 공설묘지 재개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존 묘역의 재정비 및 가용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 토지이용률을 제고함.
- 둘째, 묘지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갖춘 도시공원이 갖는 복합적 기능을 도입하여 공원화 이미지를 제고함.
- 셋째, 주변경관과 자연환경 조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재개발을 하되, 신안공설묘지 재개발 기본방향 설정은 공설묘지내 기 설치분묘 정비, 부지 정리, 주요 입지시설 및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설정 등 기본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추진절차로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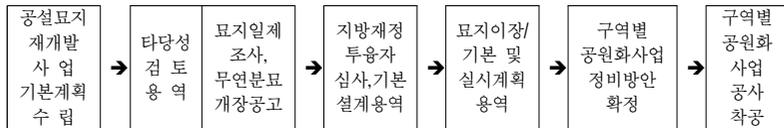
- 공설묘지 재개발의 기본 방향이 설정되면, 이를 토대로 묘지이용의 기본계획을 수립

- 묘지 재개발의 기본계획 수립은 중장기 수급계획과 상호 연계성을 토대로 공원화를 목표로 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주변지역 요구조건 수용과 가용토지의 합리적 이용방법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먼저 시행한 지방자치단체단의 공설묘지 재개발 사례들의 경험을 활용하거나, 외

부전문기관의 자문을 시행하는 것도 고려함.

<그림 2-1> 공설묘지 재개발사업 추진과정



- 재개발 기본계획은 먼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시급을 요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개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유리함.
  - 특히 신안공설묘지와 같이 도심에 인접한 사업구역은 단계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역별, 단계별로 세부 추진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자연적 환경조건, 환경영향 평가, 사회경제조건, 도로교통조건 등에 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적합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함
    - 기존 분묘 분포의 지역적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면서 구역설정, 동선계획, 시설배치계획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정리
  - 공설묘지에 도입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입지시설은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적인 현대화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주변경관과 조경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공설묘지 재개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사전 준비 작업으로 분묘 추가설치에 대한 중지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공설묘지 분묘의 이전 및 재개발 사업 사전홍보 활동(추석, 한식 등) 등을 통해 기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 확인 작업 및 일제조사 실시결과 확인된 분묘의 표식작업을(블럭 경계표시 또는 일련번호 부여) 반드시 시행
    - 이는 공설묘지 재개발 추진 이전이라도 재해위험 방지와 묘지시설 환경유지, 그리고 재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분묘처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함

-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 여기에는 사업규모, 운영관리, 재원조달, 부지정리, 입지시설(부대시설, 편익시설 등), 녹지조성, 관련시설과의 연계, 환경 및 재해 영향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
  - 이러한 재개발 사업계획은 도시계획, 지역개발계획 등 관련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변 지역의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수립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각종 관련법(도시기본계획법, 환경관련법, 수도법, 문화재관리보호법, 건축법, 도시공원법, 국토이용관리법 등)을 검토

## 2) 재개발 추진사업

- 제1단계 사업
  -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전반기는 준비 및 계획단계로 공설묘지 재개발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기본방향 및 기본계획을 확정함
    - 추진단 구성에 있어서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의 의견수렴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사전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반대민원 최소화할 필요
    - 공설묘지 부지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 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며, 주변지역의 개발계획과의 연계하여 상호보완적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 후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연구용역을 실시를 통해, 토지이용 계획과 분묘이전 계획을 수립
    - 특히 재개발 실시 설계를 원활히 실행하기 위해 기존분묘 정비의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분묘확인 및 무연분묘 조사작업 착수
- 제2단계 사업
  - 전반기 사업으로는 사업시행자 선정과정과 분묘 이장 및 개장작업의 실행
    - 사업자 선정은 개발방식 및 공공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자 선정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분묘이전에 따른 보상과 지원수준을 결정하고, 후속대책을 마련
  - 후반기에는 분묘이전 계획을 실행하면서, 부지 정지작업의 기초공사와 더불어 지형 측정 및 토지적성 평가, 재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평가 등을 실시

□ 제3단계 사업

- 2단계까지 부분 완료된 분묘이전과 공원화 및 부대시설 부지조성 작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2차 부지조성 작업을 실시.

3) 기존묘지 이전

- 묘지의 일제 조사(법 제11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당해군수·군수·구청장은 다음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음

-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경우
- ②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경우

□ 무연분묘의 처리(법 제28조)

○ 개장 주체

- 시·도지사 또는 당해군수·군수·구청장

○ 개장 절차 및 방법(시행규칙 제19조)

(1) 공 고

-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 장소 및 기간, ③ 연락처, 열람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 ※ 중앙일간신문은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조제한제도에 따라 전국을 보급 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조 제호 가목에 해당하는 신문을 말함 이하동일

(2) 무연분묘의 처리

- 신문·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의 기간 만료시까지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
  - 개장 후 봉안의 기간은 10년
  - 봉안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함

□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 (법 제20조·시행규칙 제14조)

○ 적용대상 분묘

- 2001. 1.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적용됨
- 2001. 1.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자유의사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것에 의함

○ 연고자가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

- 관할 관청에 비치된 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사항을 작성하고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음
  -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개장신고 후 개장을 하여야 함

○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

(1)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서면통보

-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 방법 ④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
- 신고서에 기존분묘의 사진과 서면통보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
  - 연고자가 아닌 설치자가 개장하는 경우에는 개장신고를 하여도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개장을 할 수 없으므로 설치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개장신고토록 함
  - 해당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함
    - ※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통보를 하지 않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

- 봉안기간은 10년

-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2)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공고

-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① 묘지 또는 분묘

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하고,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다음 공고하여야 하므로, 두 번째 공고는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
- 개장신고서에 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
  - 개장신고를 하여도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개장을 할 수 없으므로 설치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개장신고토록 함
  - 해당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함

※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공고를 하지 않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
  - 봉안기간은 10년
  -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 4. 공설묘지 재개발 사례

##### 1) 광주시 중대공설묘지

□ 사업개요

<표 2-1> 경기도 광주시 중대공원 사업개요

구분	내용	비고
명칭	■ 중대공원 자연장(공동묘지 재개발을 통한 잔디형 자연장지 조성)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50-1번지	
사업기간	■ 2008년 8월 ~ 2010년 11월	
조성규모	■ 60,690㎡ ■ 자연장 3,084㎡(2,200기), 합동분향대 1개소, 주차장 752㎡(49면), 관리동 241.3㎡, 진입로 3,306㎡, 휴게광장 376㎡, 휴게데크 6개소 등	
사업비	■ 7,606백만원(국비 504백만원, 도비 108백만원, 시비 6,994백만원) ■ 국비 6.6%, 도비 1.4%, 시비 92.0%	기존묘지보상 (이전비 포함)

□ 추진경위

<표 2-2> 경기도 광주시 중대공원 조성사업 추진경위

구분	내용
2001. 06	■ 공동묘지 재정비사업 검토요청(광주지방공사(성곽식 압골형)→광주시)
2002. 05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반영
2003. 05	■ 사전환경성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 완료
2004. 01	■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경기도)
2004. 10	■ 추모공원 사업 공청회 실시
2004. 11	■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도시계획시설결정(납골시설 60,719㎡)
2005. 02	■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완료(한강유역 환경청)
2005. 03	■ 납골시설 선정위원회 개최(성곽식 벽식 확정)
2005. 07	■ 문화재 지표조사
2005. 11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가결(광주시의회)
2006. 08	■ 질의회신(경기도 교통정책과 → 광주시) ■ 성곽식 → 자연장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님
2006. 09	■ 질의회신(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 광주시)

	■성곽식 → 자연장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제협의 대상이 아님
2006. 10	■중대동 공동묘지 정비방안 확정
2006. 12	■자연장 승인(보건복지부)
2007. 01	■묘지일제조사 공고
2007. 02	■묘지경계·현황측량, 묘지도(전산) 작성, 분묘 1,621기 확인
2007. 04	■분묘 연고자 확인 및 연고자에게 안내문 발송, 감정평가 의뢰 ■분묘이장 방법 결정, 시에 위임, 직접 이장
2007. 05	■무연분묘 개장 1차 공고, 분묘감정평가 완
2007. 06	■무연분묘 개장 2차 공고
2007. 07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2008. 02	■도시계획시설(납골시설) 변경 결정 고시
2008. 03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완료,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2008. 04	■시 사업분 분묘 개장을 위한 사업자 발주 의뢰
2008. 04	■무연분묘 개장 3차 공고
2008. 04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2008. 05	■예산부족분 도 시책보전금 신청→10억 배정)
2008. 07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고시
2008. 07	■중대공원(자연장) 공사 발주 의뢰
2008. 08	■공사 착공
2008. 10	■분묘이전작업 착수
2009. 03	■광주시 일입 분묘 2차 개장 실시 ■연고자의 일정에 맞추어 4차까지 개장함.
2009. 09	■분묘 개장 작업 완료
2009. 09	■광주시 일입분묘 자연장 재안치 실시(총 466기)

□ 주요 내용

○ 재개발 배경

- 판내 22개소 공동묘지가 있으며, 이 중 중대공원 주변 지역이 주거지로 개발됨.
- 중대동 공동묘지에 대한 재개발을 주민들이 요구하였고, 광주시 판내 공설 납골 시설 및 자연장이 전무하여 시행하게 됨.

○ 사업지 선정 과정

- 주민의 요구에 따라 재개발하였기에 특별히 사업지 선정을 위한 과정이 없었음.

○ 무연묘·유연묘 비율

- 기존 중대동 공동묘지는 총 1,801기 분묘가 조성되어 있었으며, 이 중 유연묘는 1,136기였으며, 무연묘는 665기였음.
- 유연묘 중 471기는 중대공원 조성 후 자연장으로 재안치 하였으며, 나머지는 개인이 이장하였음.

- 무연묘는 화장 후 부여군 영호추모공원에 10년간 안치하고 있음.

○ 유연묘·무연묘 이장 및 보상비

- 유연묘는 감정평가에 의해 분묘 1기당 150만원~200만원 보상(감정평가비용 제외)
- 분묘의 석물 및 조경 설치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됨.
- 총 유연묘·무연묘 이장 및 보상 등에 소요된 비용은 총 사업비 76억 중 약 40억 수준임(시설 조성비로 36억 소요)

○ 타 시설과의 차별성

- 관리동에 공원관리실, 현관로비(자연장용품 전시), 노인일자리 작업실(베이커리 제조 및 제빵 실습실), 카페테리아 등의 시설 설치하여 공설 자연장시설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실제 지역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설 조성 후 이용현황

- 기존 분묘 재안치 471기에 추가적으로 2010년 20여구, 2011년 50여구, 2012년 80여구 안치되었음.
- 이용률은 향후 화장률 증가 추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운영방안

- 직영으로 운영 중이며, 광남동사무소에서 행정절차를 담당하고 있고, 입관이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7만원을 수령하여 일용직 인건비로 4만원 지출하고, 3만원은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노인회에 지급
- 중대공원 관리는 지속적이면서 효율적인 관리측면 및 노인일자리 창출을 고려하여 대한노인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의 카페를 직접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여성 및 어린이를 위한 제과제빵 및 요리교실운영 과 소규모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있음.

○ 시설 조성시 인근마을 지원 사항

- 인근 지역민들이 재개발을 요구하여 시행된 사업의 성격으로써 지원 사항은 없었음.

□ 시사점

- 자연장 종류로 수목장, 화초장 등이 있지만, 향후 유지·관리비용 절감 및 자연재해에 따른 문제점 예방 등을 고려할 때, 잔디장이 가장 효과적임.
- 잔디장은 1년에 1회 제조작업만 하고, 조성시 토사유실에 대한 부분만 철저히 한

다면 운영관리 측면에 있어 가장 부담이 작은 시설임.

- 그러므로 다양한 자연장 시설보다는 향후 관리 및 문제 점 예방 등을 고려할 때, 잔디장으로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그림 2-2> 광주시 중대공원 재개발 사례



(2) 경기 여주시 본두리 공동묘지

□ 사업개요

<표 2-3> 경기도 여주시 가남면 본두리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개요

구분	내용	비고
명칭	■ 본두리 공동묘지 재개발사업(공동묘지 재개발을 통한 잔디형 자연장지 조성)	
위치	■ 경기도 여주시 가남면 본두리 768-1번지 일원	
사업기간	■ 2013년 12월 ~ 2014년 12월	
조성규모	■ 41,5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장 18,877㎡(7,008기), 봉안담 2,416㎡(4,944기), 평장형 봉안묘 100기, 관리사무소 1동, 도로 및 광장, 공원 등</li> </ul>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700백만원 (국비 2,950백만원, 도비 596백만원, 시비 5,154백만원)</li> <li>■ 국비 33.9%, 도비 6.9%, 시비 59.2%</li> </ul>	기존 묘지 보상비 (이전비)포함

○ 추진경위

<표 2-4> 경기도 여주시 가남면 본두리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 추진경위

구분	내용
2011. 05	■ 군정발전위원회 장사시설 현장 견학
2011. 07	■ 주민설명회 실시
2011. 09	■ 5개리 지역주민 현장견학(서울시립승화원 외 1개소)
2011. 10	■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및 대상지 예비 선정
2011. 11	■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최종 후보지 선정(가남면 본두리)
2012. 02	■ 도시관리계획결정 수립용역 착수
2012. 03	■ 문화재지표조사 완료
2012. 04	■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에 따른 묘지 일제조사 실시(연고자 파악 1차)
2012. 10	■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12. 11	■ 경기도 투융자심사 통과
2012. 11	■ 무연분묘 개장공고(1차)
2012. 12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용역 착수
2012. 12	■ 무연분묘 개장공고(2차)
2012. 12	■ 공동묘지 재개발에 따른 묘지 연고자 파악(2차)
2013. 02	■ 실시계획 용역 착수
2013. 03	■ 유연분묘 이전방법 안내문 발송(직접개장 또는 여주시위임)
2013. 05	■ 보상계획 열람공고
2013. 06	■ 무연분묘 개장용역 착수(1차 207기)
2013. 06	■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의뢰
2013. 07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요청, 보상시작
2013. 10	■ 위임유연분묘 봉안 완료(봉안함 64기 - 유토피아 추모관)
2013. 11	■ 실시계획 인가
2013. 12	■ 공사 착공
2014. 12	■ 공사 준공 예정

□ 주요 내용

○ 재개발 배경

- 관내 5개소 공설묘지와 57개소 공동묘지가 있으며, 4개소는 만장됨.

- 공설묘지 1개소는 민간사업자가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대체공설묘지를 만들어 기부채납한 것으로 만장되지 않았음 (200여기 사용 가능).
- 기존 공설·공동묘지 만장에 따라 장사문화에 대한 새로 운 인식을 반영해 자연 친화적이고 휴식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됨.

○ 사업지 선정 과정

- 여주시는 주민들에게 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2011년 9월 여주읍 가업리 등 5개 마을 주민 30여명과 함께 파주시 서울시립승화원 및 광주시 중대공원을 견학하였고, 여주읍 가업리와 가남면 본두리, 점동면 처리 등 후보지 세 곳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주민의견 수렴함.
- 이후, 2011년 11월 수렴된 주민의견을 종합 검토해 가남면 본두 3리를 대상지로 잠정 결정하고, 의회 설명, 군정발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함.

○ 유연묘·무연묘 비율

- 기존 본두리 공동묘지는 총 404기 분묘가 조성되어 있었으며, 이 중 유연묘는 170기였으며, 무연묘는 234기 었음.
- 유연묘 170기 중 64기는 여주시가 연고자로부터 위임 을 받아 화장 후, 유포아 추모관에 2년 단기 안치하였으며, 2014년 12월 본두리 자연장시설이 준공되면 이 장할 계획임.
- 위임 → 개장 → 화장 → 이장 → 재안치
- 무연묘 234기는 화장 후 경기도 광주시 스카이크슬 추 모공원에 안치하였음(10년).

○ 유연묘·무연묘 이장 및 보상비

- 유연묘는 감정평가에 의해 단장 분묘 1기당 296만원 보상, 합장 분묘 1기당 377만원 보상(감정평가비용 제외)하였고, 석물 및 조경에 따라 추가 보상하였음.
- 분묘의 석물 및 조경 설치 수준, 단장·합장 적용하여 1기 당 300만원~400만원 차등 보상
- 여주시에 위임한 연고자에게는 분묘의 석물 및 조경 설 치 수준에 따라 2만5천 원~150만원 차등 보상
- 총 유연묘·무연묘 이장 및 보상 등에 소요된 비용은 약 11억 수준임.

○ 타 시설과의 차별성

- 평장형 봉안묘역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봉안묘역은 유공자묘역으로 활용할 계획임.

○ 운영방안

- 확정되지 않았으며, 직영 또는 여주시시설관리공단 위 탁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시설 조성시 인근마을 지원사항
  - 시설 준공 이후 자연장지 내 매점운영권을 인근마을에 부여하는 방안 검토 중임.

□ 시사점

- 추진 초기에 자연장 종류로 화초장을 고려했었지만, 화초관리가 어려워 계획에서 제외하였음.
- 재원에 있어 국비 지원이 70%로 되어 있지만, 이는 자연장지와 봉안당(담) 조성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써 실제 추모공원의 전체적인 조경이나 주차장, 도로, 관리사무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도비 역시 지원률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시·군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그에 따라 여주시가 지원 받은 국비는 총 사업비의 33.9% 수준이며, 도비 역시 6.9% 수준임. 그러므로 군비를 조달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임.

<그림 2-3> 여주시 재개발 사례



## 제3장 해남군 신안공설묘지 재개발

### 제3장 해남군 신안공설묘지 재개발

1. 신안공설묘지 개요
2. 신안공설묘지 분묘조사
3. 신안공설묘지 재개발 타당성

#### 1. 신안공설묘지 개요

- 위치
  - 해남읍 신안리 468, 467-3, 467-9, 466-8
- 설치 연월일 : 2000.9.27.
- 허가면적 : 95,554m<sup>2</sup>
- 묘역면적 : 95,554m<sup>2</sup>
- 토지이용계획
  - 계획관리지역, 공동묘지, 공설묘지
- 거주현황
  - 공설묘지로부터 500m밖에 민가 20호이상 마을존재(신안리)
  - 1km 밖에 해남읍 시가지 위치
- 주요시설
  - 200m 지점에 골프연습장 및 농기계 임대사업소 위치
  - 500m 지점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장례식장 1개소 위치
- 이격도
  - 13번 일반국도와 500m 정도 이격, 806번지방도와 100m 정도 이격
- 가시권분석
  - 인근 마을 및 접근도로에서 아왜 나무 등으로 차폐되어 있음
- 개발용이성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은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토지이용이 제한됨
  - 진출입 도로는 농로를 통하여야 하므로 다소 불편
  - 806번 지방도와 불과 100m 안팎이므로 별도의 진입도로 계획필요
  - 공설묘지의 인접한 곳에 개인묘지 약 40기, 농업용 저수지 존재
- 해남읍 시가지로부터 1km 내 공설묘지가 넓게 위치해 있음
- 공설묘지 주변에 개별묘지가 무분별하게 조성 되어 있음
- 공설묘지에 매장 가능 면적이 만장에 가까운 상태로 현재 무연고자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묘지 제공

<그림 3-1> 해남군 신안공설묘지 위치도



신안공설묘지 항공사진

A지점 : 신안공설묘지

## 2. 신안공설묘지 분묘조사

### 1) 예비조사

- 분묘상황을 점검하고, 지형 또는 숲 환경 등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존재함.
  - 우기를 피하고 추석 전 별초작업이 끝나는 대로(9월 20일 예정) 실시하는 것으로 함.
    - 3천~5천기 규모로 예상함에 따라 조사 시 부착할 팻말제작 의뢰
    - 추석 전 조사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추석 이후로 연기하고, 조사 수월성 확보를 위해 별초상태 점검
      - 추석절 성묘객들이 분묘 주위에 부착된 조사팻말을 보고 위화감을 느끼거나 문의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석 10일 후인 10월 14일로 조정

<그림 3-2> 신안 공설묘지 전경



별초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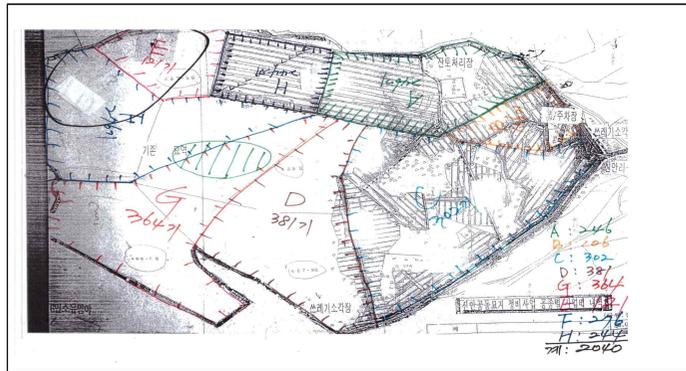
별초 후

2) 조사실시 결과

□ 분조사

- 일 시: 2017. 10. 14(토) 09:00-18:00
- 조사원: 광주카톨릭교구 연령회원 10인
- 조사내용: 팻말부착, 분묘상황표 작성

<그림 3-3 > 신안공설묘지 조사구역



<표 3-1> 분묘조사 결과표

구역	분묘유형			무연분묘비율 (%)	제단등 유무
	유연	무연	계		
A구역	142	104	246	42.3	7
B구역	64	42	106	39.6	8
C구역	144	158	302	52.3	14
D구역	85	296	381	77.7	5
E구역	35	86	121	71.1	0
F구역	69	207	276	75.0	6
G구역	132	232	364	63.7	10
H구역	26	218	244	89.3	0
총계	697	1,343	2,040	65.8	50

□ 조사결과 요약

- 분묘 조사결과, 신안공설묘지에는 2,040기의 분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무연분묘 1,343기, 유연분묘 697기로 무연분묘 비율은 65.8%임.
- 구역별로 보면, 주차장 인근 지역인 A, B 지역 이외의 지역의 무연분묘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점차 오래된 지역의 분묘는 무연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제단 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묘는 50기에 불과함
- 특히, 공설묘지 대부분이 사용기간의 종료가 없는 사용기간 미지정묘로 조성되어 있어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돌볼 후손이 없는 경우 무연고묘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그림 3-4> 묘지훼손 상태



붕분침식

불법분묘

3. 신안공설묘지 재개발 타당성

1) 법적·제도적 측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장사법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지역수급계획수립(장사법 제5조)

- 당해군수·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지역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묘지일제조사(장사법 제11조)

- 묘지 등 수급계획수립 또는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장은 묘지일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안리공설묘지의 무연분묘의비율은 65.8%를 차지하고 있어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재개발 계획이 필요함

□ 해남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4조)

- 군수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군내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공급 및 시설 수준의 제고
- 화장·봉안문화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 유도
-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자연장 유도
-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 추진

2) 도시재생적 측면

□ 도심 인근에 있는 공설묘지의 경우, 도시재생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 신안공설묘지의 경우 군청과 2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음.

- 묘지재개발은 물리환경적 측면에서 낙후된 지역의 도시기능과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것이며,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지역간 균형 발전과 자족적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고용확대, 소득증가, 상주인구의 안정적 회복 및 인근주민의 커뮤니티 재생하는 것을 의미함

- 그러므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재개발 계획단계별 주민참여보장을 통한 도시의 다양성 및 도시경관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임

- 해남읍의 도시 팽창으로 인한 신안공동묘지의 재개발이 필요함. 2019년 8월 입주 예정인 코아루터베이스 아파트가 20층으로 건설되고 있어 향후 고층의 아파트에서 신안공설묘지가 가시권에 들어오게 됨(아파트에서 직선거리로 신안공설묘지까지 약700m 정도임)

3) 경제적 측면

□ 신안공설묘지 재개발의 경제적 측면은 재개발 이후의 모습에 따라 달라짐.

- 본 장에서는 재개발이후 자연스럽게 공원화되는 것을 상정하여 지가상승요인을 분석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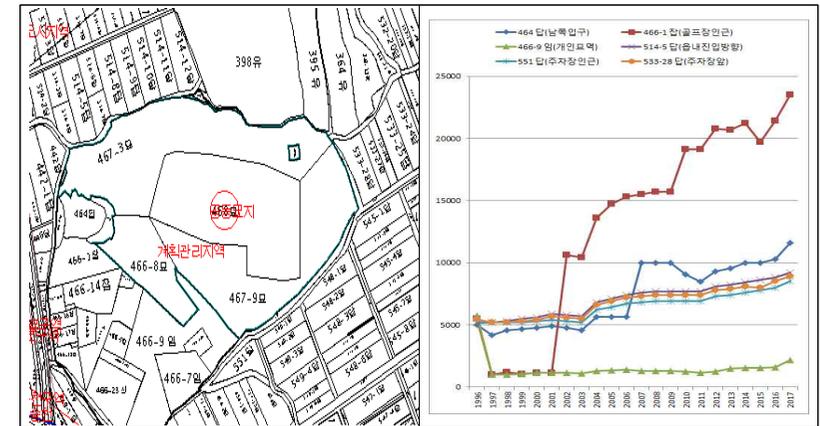
<표 3-2> 인근지역 공시지가

(단위: 원/㎡)

464답 (남쪽입구)	466-1잡 (골프장인근)	466-9입 (개인묘역)	514-5답 (읍내진입방향)	551 답 (주차장인근)	533-28답 (주차장앞)
11,600	23,500	2,150	9,200	8,500	8,900

<그림 3-5> 공설묘지 인근지 공시지가 추이

(단위: ㎡당 원)



○ 재개발의 경제적 측면

- 조사결과 나타난 묘지유형별 보상비
  - 총 18.8억원(무연묘 1.1억원, 유연묘 17.4억원, 석물 등 0.3억원)

<표 3-3> 분묘 이전비용

재개발	유형	대상 수	보상비용 (만원)	소계 (백만원)
보상비	무연묘	1,343	8	107.4
	유연묘	697	250	1,742.5
	석물 등 지장물	50	50	25.0
	총비용			1,874.9

- 재개발로 인한 공설묘지의 개발 전·후 지가 :
  - 신안공설묘지 4개 번지 중 3곳의 공시지가는 1999년 1,050원/m<sup>2</sup>을 끝으로 발표하지 있지 않고 있으면, 공설묘지 정상부인 468번지(27,666m<sup>2</sup>)의 공시지가는 발표된 바 없음.
  - 개발전후 지가의 차익을 고려하기 위하여, 개발전 공시지가를 인근 임야지역(사설묘역)의 단가를 적용하는 A안, 공시지가가 0(zero)인 B안을 가정함(A안; 2.1억원).
  - 개발후 공시지가는 현재 가장 높은 466-1잡(골프장인근)을 적용함(22.4억원)
- 공설묘지 재개발 이익
  - 총비용을 제외한 A안, B안의 개발이익은 각각 1.7억원, 3.7억원 임.

<표 3-4> 개발 전후 공시지가 비교

(단위: 백만원)

개발전 적용단가 (m <sup>2</sup> 당)	개발전 총지가 (A)	개발후 총지가 (23,500/m <sup>2</sup> ) (B)	개발후 수익 (C=B-A)	총비용 (D)	개발이익 (E=C-B)
A안: 466-9인 (2,150)	205.4	2,245.5	2,040.1	1,874.9	165.1
B안: ( 0 )	0		2,245.5		370.6

4) 재개발의 당위성

- 신안공설묘지 대부분이 사용기간의 종료없는 사용기간 미지정묘로 구성되어 있어 가족 구성원의 핵가족화 등 시대변천에 따른 무연고묘로 전략할 우려가 있음.

- 만장 등 사유로 장사시설의 기능 종료로 인한 다양한 장례수요에 대한 충족이 불가하며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분묘 형태로 잔류하고, 이장에 따른 공묘 등으로 인하여 흉물화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등 정부의 장사정책과 맞지 않아 묘지 재개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신안공설묘지 만장, 불법 및 관리부실로 인한 자연훼손 등으로 공설묘지가 제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재개발은 필연적임.
  -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남추모공원을 건립 중에 있으며, 2018년 개장을 앞두고 있음
- 신안공설묘지의 위치적 특성에 따른 재개발 당위성
  - 신안공설묘지는 타 시군의 공설묘지와는 달리 도심 반경 2km 이내에 있어 장사시설로 재활용은 지역발전에도움이 되지 않음
  - 특히, 해남군의 관문인 해남읍의 도시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인근 지역에 고층아파트가 건설 중에 있으며, 같은 현상은 인접 지역인 신안리로 확대되어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공설묘지 이전요구가 증가할 것임.
  -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개발의 경제성을 고찰한 바, 자연상태로 재개발하는 경우 묘지이전 등의 비용을 제외한 재개발 이익은 공시지가 기준 약 3.7억원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보다 가공된 상태로 개발된다면 주민들이 얻게 되는 사회적 편익은 공시지가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기대됨(4장 참조).
  - 해남군 신안공설묘지의 경우, 공설묘지 전체를 대상으로 공원화하여야 함.
    - 묘지시설이 기피시설에서 주민복지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원화가 선행되어야 함
    - 기존 묘지시설의 재개발 이후 충분한 봉안시설과 자연장 시설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재개발 계획은 도시계획과 상호 연계하여 수립함
  - 현재 매장되어 있는 기존묘지는 화장한 이후 봉안 또는 자연장하거나 공원화된 묘지시설로 이장을 유도하고, 무연고 묘지는 화장 이후 자연장과 집단 봉안시설 안치하도록 함. 해남추모공원 우선 이용혜택 부여.

□ 신안공설묘지 재개발의 장점·단점

<표 3-5> 신안공설묘지 재개발 장·단점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기존 이용자 (해남군 비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잘 정비된 해남추모공원으로 이전시 이전비용 등의 혜택과 보다 좋은 환경의 시설을 사용가능</li> <li>· 재개발 후 공공시설을 사용함으로써 편의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이용자의 경우 분묘이전, 성묘의 어려움으로 불편 예상</li> </ul>
기존 이용자 (해남군 거주자)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관련 삶의 질 개선</li> <li>· 문화교육등 보다 양질의 학습기회</li> <li>· 해남군민의 자긍심 함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비용 등의 증가</li> </ul>
관계당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동안의 숙원사업이었던 공설묘지 이전과 해남추모공원 이용의 활성화 기여</li> <li>· 시니어캠퍼스 운영 기대</li> <li>· 일자리 창출 기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개발비용 부담 가중</li> </ul>

## 제4장 신안공설묘지 재개발 사업 방향

1. 공설묘지 재개발 주민욕구조사
2. 신안공설묘지 재개발사업 방향
3. 신안공설묘지 재개발사업 타당성 분석

## 제4장 신안공설묘지 재개발 사업 방향

### 1. 공설묘지 재개발 주민욕구조사

□ 공설묘지 재개발하는 경우, 기존 분묘처리

- 전체 응답자 중, 해남공설추모공원으로의 이전이 63.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화장후 산골 13.2%, 다른 묘지로 이장 11.7%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봉안시설을 선호한 반면, 여성은 자연장, 산골을 상대적으로 선호함.
  -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의 봉안시설 선호가 높고, 고연령층은 산골선호가 높음. 70대이후는 다른 묘지로 이장이 12.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학력수준별로는 대졸이상은 해남공설봉안당을 선호(41.0%)한 반면, 고졸이하는 산골을 상대적으로 선호함(15%이상).
  -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20-30년 거주자가 해남공설봉안당 선호가 50.5%로 가장 높았음.
  - 소득수준별로는 월 300만원 이상 고소득가구가 해남공설봉안당 선호 50.5%로 가장 높고, 저소득가구 150만원 미만 산골(18.5%), 150-300만원 미만(10.5%)로 높은 편임.

<표 4-1> 재개발시 기존분묘 처리

(단위: %, 명)

구분	내용	다른 묘지로 이장	해남공설 추모공원		사설		화장후 산골 (유택 동산)	전체 (N)	비고
			봉안 시설 안치	자연 장지 안치	자연 장지 안치	봉안 시설 안치			
성별	전체	11.7	38.2	25.2	7.0	4.7	13.2	100.0 (401)	$\chi^2=20.2^{**}$ (p=.001)
	남자	16.1	40.6	21.9	8.9	5.2	7.3	100.0 (192)	
	여자	7.7	35.9	28.2	5.3	4.3	18.7	100.0 (209)	
연령대	20대	15.9	54.5	13.6	11.4	0.0	4.5	100.0 ( 44)	$\chi^2=43.28^*$ (p=.013)
	30대	11.1	40.0	24.4	4.4	13.3	6.7	100.0 ( 45)	
	40대	14.3	42.9	25.4	7.9	1.6	7.9	100.0 ( 63)	
	50대	9.8	32.9	26.8	11.0	6.1	13.4	100.0 ( 82)	
	60대	8.8	30.9	26.5	2.9	10.3	20.6	100.0 ( 68)	
70대 이상	12.7	35.3	27.5	4.9	1.0	18.6	100.0 (102)		
학력	중졸 이하	13.2	34.0	27.4	6.6	0.9	17.9	100.0 (106)	$\chi^2=18.34^*$ (p=.049)
	고졸	8.0	37.7	22.8	8.6	7.4	15.4	100.0 (162)	
	대졸 이상	15.7	41.0	26.1	6.0	4.5	6.7	100.0 (134)	
거주지	해남읍	10.2	38.1	32.5	5.6	5.6	8.1	100.0 (197)	$\chi^2=18.9^{**}$ (p=.002)
	그 외	13.6	37.9	18.0	8.7	3.9	18.0	100.0 (206)	
거주 기간	10년미만	26.4	26.4	20.8	7.5	3.8	15.1	100.0 ( 53)	$\chi^2=33.6^{**}$ (p=.004)
	10년~20년	10.4	47.9	14.6	6.3	2.1	18.8	100.0 ( 48)	
	20~30년	8.4	50.5	25.3	7.4	3.2	5.3	100.0 ( 95)	
	30년이상	9.6	32.2	28.8	7.2	6.7	15.4	100.0 (208)	
소득	150만원미만	13.9	31.1	25.2	9.3	2.0	18.5	100.0 (151)	$\chi^2=23.2^{**}$ (p=.010)
	150~300만원	13.2	36.2	25.7	6.6	7.9	10.5	100.0 (152)	
	300만원 이상	5.3	50.5	26.3	5.3	4.2	8.4	100.0 ( 95)	

□ 분묘개장시 고려사항

- 기존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전체 응답자의 57.3%가 가족간의사를 거쳐 결정한다고 응답함. 개장비용과 이장장소는 각각 19.9%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이장장소를, 여성의 경우 개장비용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함.
  - 연령별로는 20대와 70대가 가족들의 의사를 중요하게 생각함. 저연령층은 이장장소를 고연령층은 개장비용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음.
  - 학력수준별 특징은 중졸이하의 가족간 의사결정 81.7%로 가장 높았음.
  - 소득수준별로는 월 300만원 이상 고소득가구는 이장장소를, 저소득층은 개장비

용을 중요하게 생각함. 150만원 미만 가구의 68.7%는 가족간의 의사결정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함.

<표 4-2> 분묘 개장시, 우선적 고려 사항

(단위: %, 명)

구분	내용	개장 비용	이장 장소	이장 시기	가족간 의사 결정	기타	전체 (N)	비고
성별	전체	19.9	19.9	2.0	57.3	1.0	100.0 (403)	$\chi^2=13.605^{**}$ (p=.009)
	남자	15.2	25.7	3.1	55.5	0.5	100.0 (191)	
	여자	24.1	14.6	0.9	59.0	1.4	100.0 (212)	
연령대	20대	14.6	19.5	0.0	65.9	0.0	100.0 ( 41)	$\chi^2=35.053^*$ (p=.020)
	30대	17.0	25.5	0.0	57.4	0.0	100.0 ( 47)	
	40대	17.5	31.7	4.8	44.4	1.6	100.0 ( 63)	
	50대	23.8	23.8	4.8	45.2	2.4	100.0 ( 84)	
	60대	23.0	18.9	0.0	56.8	1.4	100.0 ( 74)	
	70대 이상	18.8	7.3	1.0	71.9	1.0	100.0 ( 96)	
학력	중졸 이하	7.1	10.1	1.0	81.8	0.0	100.0 ( 99)	$\chi^2=47.044^{***}$ (p=.000)
	고졸	29.3	17.4	1.2	50.3	1.8	100.0 (167)	
	대졸 이상	17.9	29.9	3.7	47.8	0.7	100.0 (134)	
거주지	해남	19.0	21.5	1.0	57.9	0.5	100.0 (195)	$\chi^2=2.674$ (p=.614)
	그 외	20.7	18.3	2.4	57.2	1.4	100.0 (208)	
거주 기간	10년미만	24.1	13.8	1.7	60.3	0.0	100.0 ( 58)	$\chi^2=9.187$ (p=.687)
	10년~20년	25.0	16.7	2.1	54.2	2.1	100.0 ( 48)	
	20~30년	24.7	17.2	1.1	55.9	1.1	100.0 ( 93)	
	30년이상	15.4	23.4	2.5	57.7	1.0	100.0 (201)	
소득 수준	150만원미만	17.3	12.7	0.7	68.7	0.7	100.0 (150)	$\chi^2=19.675^*$ (p=.012)
	150~300만원	23.2	22.6	1.9	50.3	1.9	100.0 (155)	
	300만원 이상	18.1	26.6	4.3	51.1	0.0	100.0 ( 94)	

□ 재개발 형태

- 전체 응답자 중, 기존 묘역을 (체육공원, 자연학습원, 야영장, 체험학교 등)공원화 시설로 전환 3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로 재사용 35.5%, 청소년관련, 노인건강시설 등 복지시설타운 조성은 21.8%, 재개발 반대 5.3%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 보면, 40-50대는 공원화시설을, 30대와 60대이상은 장사 시설로 재사용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학력별로는 고졸이상은 공원화시설을, 중졸이하는 장사시설(42.9%)로 재사용을 선호함.
-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20년 미만 거주자가 공원시설을, 20년 이상 거주자는 재사용을 선호함.
- 소득수준별로는 150만원 미만 저소득가구는 장사시설로 재사용(41.2%)을, 150만원 이상 가구는 공원화시설을 선호함.

<표 4-3> 공설묘지 재개발 형태

(단위: %, 명)

구분	내용	군민 공원화 시설 조성	군민 복지 시설 타운 조성	장사 시설로 재사용	재개발 사업 반대	기타	전체 (N)	비고
성별	전체	36.3	21.8	35.5	5.3	1.3	100.0 (400)	$\chi^2=7.701$ (p=.103)
	남자	38.1	15.9	39.2	5.8	1.1	100.0 (189)	
	여자	34.6	27.0	32.2	4.7	1.4	100.0 (211)	
연령대	20대	39.5	18.6	37.2	4.7	0.0	100.0 ( 43)	$\chi^2=41.199^{**}$ (p=.004)
	30대	39.1	13.0	43.5	4.3	0.0	100.0 ( 46)	
	40대	52.5	8.2	32.8	3.3	3.3	100.0 ( 61)	
	50대	42.2	21.7	27.7	4.8	3.6	100.0 ( 83)	
	60대	34.7	21.3	38.7	4.0	1.3	100.0 ( 75)	
	70대 이상	18.7	36.3	36.3	8.8	0.0	100.0 ( 91)	
학력	중졸 이하	22.4	26.5	42.9	8.2	0.0	100.0 ( 98)	$\chi^2=28.575^{**}$ *
	고졸	36.7	26.5	31.9	1.8	3.0	100.0 (166)	
	대졸 이상	45.9	12.8	34.6	6.0	0.8	100.0 (133)	
거주지	해남읍	38.9	22.3	31.1	6.7	1.0	100.0 (193)	$\chi^2=4.553$ (p=.336)
	그 외	34.0	20.9	39.8	3.9	1.5	100.0 (206)	
거주 기간	10년미만	37.9	24.1	36.2	1.7	0.0	100.0 ( 58)	$\chi^2=23.671$ (p=.023)
	10년~20년	59.6	4.3	31.9	4.3	0.0	100.0 ( 47)	
	20~30년	36.2	17.0	40.4	5.3	1.1	100.0 ( 94)	
	30년이상	30.8	26.3	34.3	6.6	2.0	100.0 (198)	
소득 수준	150만원미만	24.3	25.7	41.2	7.4	1.4	100.0 (148)	$\chi^2=19.610$ (p=.012)
	150~300만원	40.5	22.9	30.1	5.2	1.3	100.0 (153)	
	300만원 이상	47.4	13.7	35.8	2.1	1.1	100.0 ( 95)	

□ 재개발 장사시설

- 재개발 후 재사용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자중, 선호하는 장사시설에 대한 질문에서는 자연장지 조성 41.7%, 봉안시설설치 34.5%, 공설묘지 확대 23.0%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 특징에서는 고졸층이 공설묘지 확대설치 38.0%로 가장 높고, 중졸(57.1%), 대졸(41.3%)은 자연장지를 선호함
- 거주기간별로는 20-30년 거주층은 공설묘지확대(42.1%)를, 그 외는 자연장지 조성을 선호함.

<표 4-4> 재개발 장사시설

구분	내용	기존묘지 줄이고		공설묘지 확대설치	기타	전체 (N)	비고
		자연장지 조성	봉안시설 설치				
성별	전체	41.7	34.5	23.0	0.7	100.0 (139)	$\chi^2=1.962$ (p=.580)
	남자	38.0	38.0	22.5	1.4	100.0 (71)	
	여자	45.6	30.9	23.5	0.0	100.0 (68)	
연령대	20대	50.0	28.6	21.4	0.0	100.0 (14)	$\chi^2=17.354$ (p=.298)
	30대	38.1	38.1	19.0	4.8	100.0 (21)	
	40대	25.0	45.0	30.0	0.0	100.0 (20)	
	50대	50.0	45.5	4.5	0.0	100.0 (22)	
	60대	33.3	33.3	33.3	0.0	100.0 (27)	
	70대 이상	51.5	21.2	27.3	0.0	100.0 (33)	
학력	중졸 이하	57.1	35.7	7.1	0.0	100.0 (42)	$\chi^2=15.548^*$ (p=.016)
	고졸	30.0	32.0	38.0	0.0	100.0 (50)	
	대졸 이상	41.3	34.8	21.7	2.2	100.0 (46)	
거주지	해남	40.0	31.7	26.7	1.7	100.0 (60)	$\chi^2=2.252$ (p=.522)
	그 외	43.0	36.7	20.3	0.0	100.0 (79)	
거주기간	10년미만	55.0	15.0	25.0	5.0	100.0 (20)	$\chi^2=23.451^{**}$ (p=.005)
	10년~20년	50.0	35.7	14.3	0.0	100.0 (14)	
	20~30년	23.7	34.2	42.1	0.0	100.0 (38)	
	30년이상	47.0	40.9	12.1	0.0	100.0 (66)	
소득수준	150만원미만	45.9	24.6	27.9	1.6	100.0 (61)	$\chi^2=6.718$ (p=.348)
	150~300만원	34.9	44.2	20.9	0.0	100.0 (43)	
	300만원 이상	43.8	40.6	15.6	0.0	100.0 (32)	

□ 조사결과 시사점

- 전체 응답자 중, 기존 묘역을 (체육공원, 자연학습원, 야영장, 체험학교 등)공원화 시설로 전환 3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로 재사용 35.5%,

청소년관련, 노인건강시설 등 복지시설타운 조성은 21.8%, 재개발 반대 5.3%로 나타남.

- 신안군민의 공설묘지 재개발 찬성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사시설 재사용 선호비율이 35.5%로 비교적 높아 일정 수준의 묘지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 나타난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적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우선, 군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신안공설묘지 재개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해남추모공원의 활용도를 적극 높여, 자연장과 봉안수요를 담당해야 할 것임
- 또한, 공설묘지에 대한 일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공설묘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국토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자연친화적인 화장 후 안치시설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임

## 2. 신안공설묘지 재개발사업의 방향

□ 신안공설묘지 재개발사업의 방향

- 그동안의 공설묘지는 인근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고 공설묘지를 이용하는 외부인들이 혜택을 보는 이른바 ‘비용집중-혜택분산’이라는 전형적인 비선호시설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음. 따라서 재개발 방향은 ‘비용분산-혜택집중’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방향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인근지역 뿐만 아니라 해남군민들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급진적인 패쇄 방식보다는 단계적으로 실시 가능한 사업을 전제로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제안함.

□ 공원화 사업

- 모든 군민 뿐만 아니라 군외 거주자들도 관광 또는 테마 여행을 위해 이용 가능

하여, 이용자들로부터 시설이용료 또는 지역특산물 판매 등으로 수익사업을 병행할 수 있음.

- 비용분산-혜택집중화를 통해 인근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기대할 수 있음. 단, 묘지 시설이었다는 선입견을 극복하기 위한 친자연적 시설 현대화가 병행되어야 함.

□ 문화복지시설 조성

- 국내에서 운영중인 대부분의 기존 복지시설들은 아동, 장애인, 노인 등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향후 해남문화복지타운(가칭) 건립으로 아동, 청소년, 여성, 어르신, 일반성인 등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함께 어우르는 공간으로 재개발하면, 세대간 상호소통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을 기대되어 바람직한 개발 방안임.
- ‘전 세대가 소통하는 문화·복지·건강의 요람 해남문화복지타운(가칭)을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복지타운 내 도입하도록 하며, 복지타운 내에서 문화, 복지, 건강을 위한 활동을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구상함
- 문화의 공간이 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 및 문화강좌 프로그램실 제공, 복지의 공간을 위한이 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도입, 건강의 공간이 되기 위하여 도시형보건지소 및 각종 체육공간 등을 제공하여 땅끝 해남의 문화, 복지, 건강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함

<그림 4-1> 해남문화복지센터 위치도(안)



<사례> 화성시 나래울 복합복지타운

□ 시설 일반현황

-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여울로2길 33
  - 시설규모 : 부지면적 13,233㎡, 연면적 18,384㎡
  - 개관일: 2011년 5월
  - 건립비: 49,300백만원
  - 연간운영비: 약 5,000백만원

□ 설립목적

- 한울타리 안에 어르신,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등 화성시민 모두가 더불어 살면서 소외와 차별없이 서로 소통하는 화합의 장
- 화성시 시민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전달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통합복지서비스 모델을 창출

□ 사업목표

- 통합형복지: 아동 청소년 성인 어르신, 장애인등 모든 계층이 함께 하는 복지
- 찾아가는 복지: 시민이 원하는 곳에 기동력있게 찾아가는 복지
-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 시민의 참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 어린이 복지시설과 다기능화 결과

- 성공적인 통합형 복지의 사례로서 이용자간 만족도가 높음

<표 4-5> 화성시 나래울 복합복지타운 프로그램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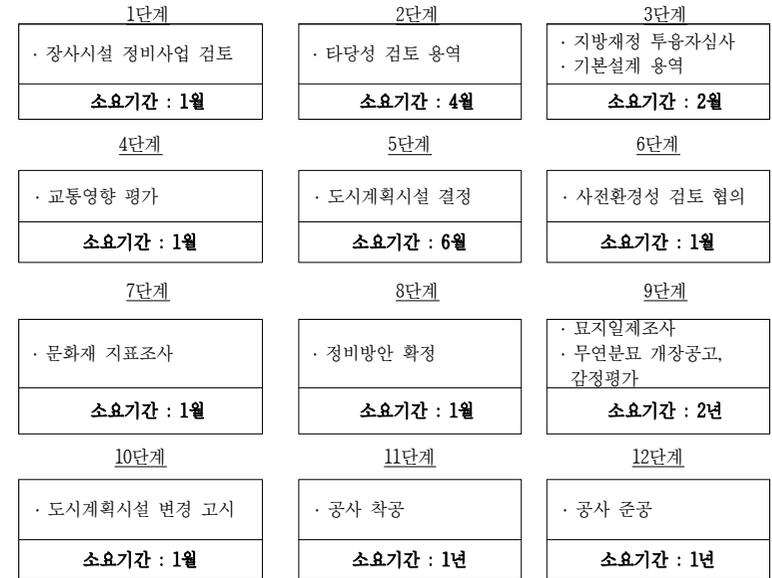
구분	문화동	중앙동	재활동
6층	육상공원		
5층	요리교실	식당 카페나래	화성시복지재단이사장실, 화성시 복지재단 사무실, 운동클리닉, 심리운동실
4층	도서관, 건강교실, 정보화교실, 세미나실2, 관장실	도서관	언어활동실1-3, 언어활동실(그룹), 미술활동실, 음악활동실, ADL실
3층	문화교실1, 문화교실2, 문화교실3, 문화교실5, 문화교실6, 장기바둑실		특수교육실, 놀이활동실1-2, 감각통합실 작업클리닉, 직업평가실, 사무실(운동지원, 교육지원)
2층	기온누리반, 그린나래반, 직업훈련실, 서레교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무실(문화지원, 일자리 지원, 청소년 지원), 사무실(사무국장, 기획관리)		사무실(사례관리, 지역복지), 공동작업장, 무한돌봄센터, 드림스타트, 자원봉사센터, 어린이집
1층	안내 데스크, 목욕탕, 헬스장, 에어로비실, 휴나래, 이미용실, 노노카페, 방과후교실(드림스타트), 연주실, 당구장, 노래방, 피아노실, 도예실, 공예실, 전시실, 사무실(운영지원)		
지하1층	주차장, 푸드마켓, 의무실, 통증치료실, 다목적강당, 대회의실, 소회의실		

### 3. 신안공설묘지 재개발 사업 타당성 분석

#### 1) 재개발사업 추진절차

□ 재개발사업 추진절차

<그림 4-2> 공설묘지 재개발사업 추진절차



2) 재개발사업 추진배경

□ 해남군 국공립어린이집 부족

○ 해남군 내에는 단 1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을 뿐, 상대적으로 타시군에 비해 사설어린이집이 많음

<표 4-6> 전남지역 어린이집 유형(2016.12)

(단위 : 개소)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소 계	1,251	97	174	55	406	490	2	27
목포시	221	6	20	1	72	120	1	1
여수시	152	15	20	4	69	38	0	6
순천시	257	14	11	4	78	146	1	3
나주시	72	8	9	1	21	26	0	7
광양시	148	12	10	2	64	59	0	1
담양군	13	0	2	1	8	1	0	1
곡성군	12	3	7	1	0	0	0	1
구례군	10	1	0	3	3	3	0	0
고흥군	22	2	6	5	8	1	0	0
보성군	13	4	3	1	4	1	0	0
회성군	67	1	5	1	20	40	0	0
장흥군	18	4	4	3	1	6	0	0
강진군	16	0	4	7	5	0	0	0
해남군	29	1	10	2	12	4	0	0
영암군	43	3	15	4	8	10	0	3
무안군	61	3	9	4	19	24	0	2
함평군	13	1	9	1	1	1	0	0
영광군	19	1	9	2	3	3	0	1
장성군	14	3	5	1	2	2	0	1
완도군	25	5	6	5	6	3	0	0
진도군	12	3	3	2	2	2	0	0
신안군	14	7	7	0	0	0	0	0

○ 한편, 해남군 읍내 어린이집은 대부분 군청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최근 새롭게 아파트가가 건설되는 외곽지역(806번 지방도 인근)에는 보육시설 수요가 부족함

<표 4-7> 해남군 어린이집 분포

어린이집명	시설 유형	주소	평가인 증	정원	비고
공립해남어린이집	공립	해남읍 교육청길	인증	49	
천진어린이집	법인	해남읍 팔복길	인증	95	
서림어린이집	법인	해남읍 남부길	인증	98	시간연장
복지어린이집	법인	해남읍 중앙1로	인증	183	
화산어린이집	법인	화산면 송평로	인증	90	
시등어린이집	법인	황산면 시등로	인증	119	
산이어린이집	법인	산이면 초두길	인증	120	시간연장
신생어린이집	법인	문내면 우수영안	인증	95	
리틀어린이집	법인	해남읍 구교3길	인증	86	영아전담
색동어린이집	법인	해남읍 해리4길	인증	81	영아전담
벚엘특수어린이집	법인	해남읍 웅달길	인증	45	장애아전담
원광어린이집	법인·단체등	해남읍 군청길	인증	42	
한들어린이집	법인·단체등	해남읍 군청길	인증	75	
시온어린이집	민간	해남읍 구교1길	인증	39	시간연장
무지개어린이집	민간	송지면 산정4길		39	시간연장
아트빌어린이집	민간	해남읍 서림길	인증	182	시간연장
화원어린이집	민간	화원면 금평길		39	
아이세상어린이집	민간	해남읍 서림길	인증	65	영아전담
동심어린이집	민간	해남읍 서성1길	인증	57	시간연장
남창어린이집	민간	북평면 불무당길		39	시간연장
예담어린이집	민간	해남읍 구교3길		39	
옥천어린이집	민간	옥천면 영안길		39	
들리어린이집	민간	해남읍 북부순환		39	
송지중앙어린이집	민간	송지면 산정1길	인증	77	
금사과어린이집	민간	해남읍 교육청길	인증	29	시간제
햇님놀이방	가정	해남읍 북부순환		20	
뽕뽕놀이방	가정	해남읍 교육청길		20	
아이짚놀이방	가정	해남읍 해남로		20	
예찬어린이집	가정	해남읍 팔복길		20	

□ 해남군 내 공립 청소년수련관 부재

- 해남군 내에는 공립 청소년수련관이 없으며, 황산면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을 뿐임.

<표 4-8> 호남지역 청소년수련관 분포

지역	시설명	설립주체	운영형태	수용정원
전남	장성군청소년수련관	군립	위탁	300
	진도군청소년수련관	군립	위탁	500
	무안군청소년수련관	군립	직영	256
	영암군청소년수련관	군립	직영	460
	장흥군청소년수련관	군립	위탁	300
	화순군청소년수련관	군립	직영	220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	시립	위탁	700
	나주시청소년수련관(일송정)	시립	위탁	500
	순천청소년수련관	시립	직영	468
	여수시청소년수련관	시립	위탁	450
전북	나로우주청소년수련원	국립	직영	5,000
	고창군청소년수련관	군립	직영	450
	순창군청소년수련관	군립	위탁	250
	무주청소년수련관	군립	위탁	300
	진안군청소년수련관	군립	직영	250
	완주군청소년수련관	군립	직영	150
	김제시청소년수련관	시립	직영	50
정읍시청소년수련관	시립	위탁	300	

□ 해남군 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협소

- 해남군 노인 인구는 2만 명을 상회하고 있으나 군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경로당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 노인교실 6개로 인근 지역보다 적음
- 현재 군내 소재한 법인운영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으나 대지 2,612㎡, 건물 연건평 1,646㎡으로 협소하고 중심부에 있어 환경이 양호하지 못함.

<표 4-9> 전남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2016. 12)

시·도	주민등록인구(A)	합계	노인복지관		경로당(C)	노인교실(D)	인구 10만명당 시설수		
			시설수(B)	종사자수			A/B	A/C	A/D
전남전체	398,916	8,986	29	286	8,884	73	7	2,227	18
목포시	32,445	199	4	37	185	10	12	570	31
여수시	46,632	524	3	22	521	0	6	1,117	0
순천시	37,961	657	3	31	652	2	8	1,718	5
나주시	23,489	600	2	32	583	15	9	2,482	64
광양시	17,026	316	2	18	314	0	12	1,844	0
담양군	13,329	352	1	39	351	0	8	2,633	0
곡성군	9,912	321	-	-	321	0	0	3,238	0
구례군	8,250	275	-	-	275	0	0	3,333	0
고흥군	25,364	637	1	16	636	0	4	2,507	0
보성군	15,269	437	1	13	436	0	7	2,855	0
화순군	15,516	433	1	15	430	2	6	2,771	13
장흥군	12,610	405	1	10	403	1	8	3,196	8
강진군	11,655	335	-	-	332	3	0	2,849	26
해남군	21,549	580	1	11	573	6	5	2,659	28
영암군	13,574	448	1	7	439	8	7	3,234	59
무안군	16,175	414	1	0	405	8	6	2,504	49
함평군	11,302	371	1	7	366	4	9	3,238	35
영광군	14,773	364	1	3	363	0	7	2,457	0
장성군	12,546	337	1	0	336	0	8	2,678	0
완도군	15,623	306	1	2	301	4	6	1,927	26
진도군	10,105	269	2	22	267	0	20	2,642	0
신안군	13,811	406	1	1	395	10	7	2,860	72

- 중장년층을 위한 교육, 여가프로그램 교실이 부재함. 점차 은퇴세대에 접어드는 시니어세대를 위한 문화,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니어캠퍼스가 필요함.

- 해남문화복지센터 건립을 통해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고 해남군의 부족한 문화·복지시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3) 재개발사업(안)

□ 주민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중심타운 건설

<표 4-10> 개발계획(안)

구분	사업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1단계	2017-2019	해남읍 공설묘지 분묘이전 추진	-지적 및 좌표 측량실시로 대상분묘 파악 및 관리 -묘적부 및 한식과 명절 등 성묘시기를 통한 연고자 파악
2단계	2020-2022	군민 휴식공간 에코공원 조성	-신안 저수지와 연계한 친환경 에코공원 조성 -공원의 녹지공간을 활용한 파크 골프장 조성 -묘지의 이미지를 탈바꿈할 수 있는 사계절 꽃단지 조성
3단계	2020년 이후	공공시설부지로 활용	-해남군에 산재되어 있는 복지관련 시설(장애인,청소년,성폭력,다문화 등)을 한곳으로 집약화 -2단계 조성 후 우선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

1) 군민 휴식공간 에코공원 조성(안)

- 신안 저수지와 연계한 친환경 에코공원 조성
- 공원의 녹지공간을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성
- 묘지의 이미지를 탈바꿈할 수 있는 사계절 꽃단지 조성
  - 사업기간: 2020년 ~2021년
  - 사 업 비: 1,500백만원
  - 사업내용

구분	사업량	공사비(백만원)	비고
계		1,500	
에코공원	65,000m <sup>2</sup>	500	
파크골프장	10,000m <sup>2</sup>	500	
캠핑장	10,000m <sup>2</sup>	200	
저수지 테크산책로	L=1.1km	300	

가. 에코공원 조성

- 위 치: 해남읍 신안리 467-3번지 외
- 면 적: 65,000m<sup>2</sup>

- 사 업 비: 500백만원
- 사업내용
  - 어린이 교통체험시설
  - 자연관찰로: 황토흙길, 건강지압로
  - 야외학습공간: 산나물 체험, 유실수 따기, 내이름 나무심기 등
  - 숲속놀이교실: 숲속 놀이터, 숲 체험 등
  - 휴식공간: 벤치, 전망공간 등
  - 체력단련시설: 운동기구 등
- 사업비 산출내역

구분	사업량	공사비(백만원)	비고
계		500	
교통체험시설	1식	100	교통체험
자연관찰로	L=800m	100	황토흙길
건강지압로	L=200m	50	지압로
야외학습공간	1개소	50	산나물 체험, 유실수 따기등 내이름 나무 심기
휴식공간	5개소	50	벤치, 전망공간
체력단련시설	2개소	50	운동기구
꽃 단지	1식	100	4계절 꽃단지

나. 파크 골프장 조성

- 위치: 해남읍 신안리 467-3번지 이
- 사업면적 : 10,000m<sup>2</sup>
- 사업비 : 500백만원
- 사업내용
  - 경기장 : 9홀(파3-파5) / 총길이 680m
  - 관리실, 휴게실 : 30m<sup>2</sup>

다. 캠핑장 조성

- 위치: 해남읍 신안리 467-3번지 외
- 사업량: 10,000m<sup>2</sup>
- 사업비: 200백만원
- 사업내용:

클램핑 시설 5개소  
 턴트 바닥설치 30개소  
 캠핑장 테크 설치, 폐기물 처리장, 공동취사시설

라. 저수지 활용 친환경 생태 산책로 조성

- 위치: 해남읍 신안리 398번지 외 11필지
- 사업량: L=1.1km
- 사업비: 300백만원
- 사업내용: 저수지 생태 테크 산책로 조성

2)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안)

- 해남군에 산재되어 있는 복지관련 시설(장애인, 청소년, 성폭력, 다문화 등)을 한 곳으로 집약화
- 2단계 조성 후 우선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
  - 사업시기: 묘지이전 후 공원으로 활용하면서 추가적인 검토 후 추진
  - 추진방향: 해남군 관내 복지시설을 한 곳을 집약화
  - 사업비: 7,500백만원
  - 사업내용: 청소년 수련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가. 청소년 수련관

- 위치: 해남읍 신안리 467-3번지 외
- 면적: 5,000m<sup>2</sup>
- 사업비: 5,000백만원(국비 80%, 군비 20%)
- 사업내용: 공연장, 동아리실, 체육시설, 헬스장, 공연연습실, 휴(休)카페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 위치: 해남읍 신안리 467-3번지 외
- 면적: 5,000m<sup>2</sup>
- 사업비: 2,000백만원(국비 50% 군비 50%)

○ 시설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 영아체험놀이실, 유아체험놀이실, 시간제 보육실, 생태체험시설, 그림책 도서관 등
- 공립어린이집 설치 : 기존 시설이전

3) (가칭)해남문화복지센터 사업 타당성 분석

가) 사업비 산정(안)

□ 신안공설묘지 재개발 사업 총사업비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 분묘 이전사업 : 10,400백만원
- 에코파크 조성 : 1,500백만원
- 저수지 활용 친환경 생태 산책로 조성: 300백만원
- 청소년수련관 : 5,000백만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2,000백만원
- ※ 총사업비 : 10,400백만원

나) 사업타당성 분석의 개념

- 경제성 분석은 재무적 타당성 분석(Financial analysis)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Economic analysis)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 개별사업 자체 내의 입장에서 실제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수익률을 계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사업의 수익성이라고도 함.
- 반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란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국가 전체적(사회적) 입장에서 측정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 수익률을 계산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익적 측면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정책결정의 기준으로 삼되, 사업적 측면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참고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1) 재무적 타당성 분석

- 재무성 분석은 사업추진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며 민간자본을 이용한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사업추진의 정책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용도로 시행함

□ 재무적 타당성 분석 방법

○ 수익성 지수(PI : Profitability Index)

- 수익성 지수법은 자본비용으로 할인된 현금유입의 현가를 현금유출의 현가로 나눈 값임
- 즉, 장래에 발생하는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 할인율(자본비용,  $k$ )로 할인하여, 분석 기간 중의 기대되는 현금유입의 현재 가치총액과 현금유출의 현재 가치총액의 비율을 계산하는 지표임
- PI가 1보다 클수록 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PI = \sum \frac{CI_t}{(1+k)^t} / \sum \frac{CO_t}{(1+k)^t}$$

$CI_t$  : 연차별 현금유입액,  $CO_t$  : 연차별 현금유출액  
 $k, t$ 는 각각 할인율, 기간을 의미함

○ 내부수익률(IRR : Internal Rate of Return)

- 내부수익률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유입의 현가와 현금유출의 현가를 같게 하는 할인율임
- 즉, 어떤 사업의 순현재가치(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됨

$$\sum \frac{CI_t}{(1+r)^t} = \sum \frac{CO_t}{(1+r)^t}$$

$CI_t$  : 연차별 현금유입액,  $CO_t$  : 연차별 현금유출액  
 $r, t$ 는 각각 할인율(내부수익률), 기간을 의미함

- 단일투자안의 경우에는, 투자안의 IRR이 자본비용( $k$ )보다 크면 그 투자안을 채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함
- 상호배타적인 여러 투자안들의 경우에는, 투자안의 IRR이 자본비용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함.

○ 순현재가치(NPV : Net Present Value)법

- 순현재가치법은 경제성을 가늠하는 척도 중의 하나로서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순현금 유입액을 자본비용으로 할인한 순현금 유입의 현가(現價)에서 순현금유출의 현가(現價)를 공제한 값임
- 순현재가치는 대안선택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계산이 용이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보편적으로 이용됨

$$NPV = \sum \frac{CI_t}{(1+k)^t} - \sum \frac{CO_t}{(1+k)^t}$$

$B_t$  : 연차별 현금유입액,  $C_t$  : 연차별 현금유출액  
 $k, t$ 는 각각 할인율, 기간을 의미함

- 단일투자안의 경우 투자안의 NPV가 0(零)보다 크면 그 투자안을 채택하고, 0보다 작으면 기각함
- 상호배타적인 여러 투자안들의 경우, 0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 NPV가 가장 큰 투자안을 채택함

□ 재무적 타당성 분석의 판단기준

- 위에서 살펴 본 세 가지의 분석 방법 중 내부수익률법과 순현재가치법을 살펴보면, 내부수익률법에서 가정하고 있는 어떤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유입을 그 투자안의 IRR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반해 순현재가치법(NPV)은 자본비용으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하고 있어 순현재가치법(NPV)이 더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내부수익률(IRR)은 투자로부터 얻는 수익률을 의미하는 반면 순현재가치법(NPV)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가치의 증가분을 나타내므로, 여러 개의 투자안이

존재하는 경우 내부수익률(IRR)의 크기에 따라 투자안을 선택하면 최적투자조합을 택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나, 순현재가치법(NPV)의 크기에 따라 투자안을 선택하면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투자조합을 택할 수 있음.

- 더구나 순현재가치법(NPV)은 해당 투자안의 기업 가치에 대한 공헌 정도를 현가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가치의 합계원칙을 적용할 수 있지만 내부수익률법은 그렇지 못하며, 내부수익률을 이용하여 투자가치를 평가할 경우 투자안에 따라서 복수(複數)의 내부수익률(IRR)이 존재하므로 투자의사결정이 어렵게 됨.
- 순현재가치법(NPV)의 변형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 수익성 지수법도 투자안에 따라서 순현재가치법(NPV)과 서로 다른 평가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순현재가치법(NPV)에 의해 투자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순현재가치는 어떤 투자안으로부터 기대되는 경제적 공헌을 나타내고 있으나 수익성지수는 어떤 투자안의 상대적인 수익성을 비율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임.
- 이와 같이 각 방법들의 장·단점을 종합해 본 결과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 세 가지 분석방법을 모두 시행하여 결과를 제시하되, 타당성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순현재가치를 주된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표 4-11> 재무적 타당성 분석 판단기준

분석기법	판단	장점	단점
수익성지수 (PI)	PI > 1	• 이해용이, 사업규모 고려 • 현금유입 및 유출 발생시간의 고려	• 상호배타적 대안선택의 오류 발생 가능
내부수익률 (IRR)	IRR > k	• 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 타 대안과 비교가 용이 • 평가과정과 결과 이해가 용이	• 사업의 절대적 규모를 고려하지 않음 • 복수의 IRR이 동시에 도출될 가능성내포
순현재가치 (NPV)	NPV > 0	• 대안 선택 시 명확한 기준 제시 • 장래발생 현금유입 및 유출의 현재 가치 제시 • 한계 순현재가치 고려, 타 분석에 이용가능	• 이해의 어려움 • 투자규모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

□ 재무적 타당성 분석의 전제

- 본 사업으로 인한 현금흐름(Cash Flow)을 추정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현금흐름

이란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유입액(Cash Inflow)과 현금유출액(Cash Outflow)을 정확히 추정하기 위한 것임.

- 이러한 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 추정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본 사업의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에 적용될 항목들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함.
- 현금유입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먼저 시설 이용인원을 추정함.

① 현금 유입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 수입

- 해남문화복지센터 내 어린이집의 운영을 통해 현금유입이 발생함
- 보육료수입은 각 나이별 반의 정원을 기준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상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적용하였으며, 연간 약 199,500천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표 4-12> 어린이 보육시설 보육료 수입(단위: 원)

구분	정원	보육료(1달)	월수입	연수입
0세반	5	406,000	2,030,000	24,360,000
1세반	10	357,000	3,570,000	42,840,000
3세반	15	295,000	4,425,000	53,100,000
3-5세반	30	220,000	6,600,000	79,200,000
계	60	-	16,625,000	199,500,000

□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 해남문화복지센터 내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각종 프로그램실 및 컴퓨터 교육실에서 이루어지는 강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현금유입이 발생할 것임
- 프로그램 수입 도출을 위해 사례를 통한 정원을 적용하였으며, 수강료의 경우 ‘해남황산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된 기준을 고려하여 일반수업 6개월에 1만원, 컴퓨터수업 3개월에 2만원을 적용한 결과 연간 약 16,200천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됨

<표 4-13 > 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단위: 원)

프로그램명	1일 강좌수	정원(명)	정원 충족률	수강료 (3개월)	수입 (3개월)	연수입
일반프로그램 (주3회)	20	20	90%	5,000	1,800,000	5,400,000
일반프로그램 (주2회)	20	20	90%	5,000	1,800,000	5,400,000
컴퓨터프로그램 (주3회)	10	10	90%	20,000	1,800,000	5,400,000
계						16,200,000

□ 주민문화복지시설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 해남문화복지센터 내 주민문화복지시설 중 프로그램실에서 이루어지는 강습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현금유입이 발생할 것임
- 프로그램 수입 도출을 위해 사례를 통한 정원을 적용하였으며, 수강료의 경우 타 지자체 사례조사 결과를 적용한 결과 연간 약 280,800천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됨

<표 4-14> 주민문화복지시설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단위: 원)

프로그램명	1일 강좌수	정원(명)	정원 충족률	수강료 (1개월)	월수입	연수입
일반프로그램 (주3회)	20	20	90%	30,000	1,080,000	129,600,000
일반프로그램 (주2회)	20	20	90%	20,000	7,200,000	86,400,000
컴퓨터프로그램 (주3회)	10	20	90%	30,000	5,400,000	64,800,000
계						280,800,000

□ 식당 수입

- 해남문화복지센터 내 식당시설에서 실비지출로 이용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식당 수입이 발생함
- 1회 식사시 2회전을 기준으로 수급자 어르신 무료 이용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 식당 수입은 연간 40,500천원으로 추정됨

<표 4-15> 식당 수입(단위: 원)

식당 이용자수(일)	실비지출 이용자 비율	비용	월수입	연수입
150명	50%	1,500	3,375,000	40,500,000

□ 청소년수련관 수입

- 청소년수련관 수입은 청소년수련시설 통계연람에 나타난 재정운영 결과를 추정할 용하기로 함.
  - 해남문화복지센터 내 청소년수련관은 전국 평균적 개념의 시설을 가정함
    - 2014년 현재 전국 청소년수련관의 평균 면적은 5141.6㎡임
  - 2014. 12 전남지역 청소년수련관 10개의 평균 총수입은 4억 6,776만원 임. 여기에 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면 2016년 말 기준 4억7,553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음.

<표 4-16> 전남지역 청소년수련관 재정수지 현황

구분	2014. 12	2016. 12
평균 총수입	467,660	475,535
평균 운영비	467,588	475,461

② 현금 유출

□ 묘지이전 및 초기투자비

- 묘지 등 이전비 1,875백만원
- 해남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건설비용으로 초기투자비는 약 10,400백만원임
  - ※ 초기비용은 12,275백만원임

□ 인건비 지출

- 해남문화복지센터는 (노인여가복지시설+주민문화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가 지출됨
- 인건비 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2017년 기준으로 산정 시 연간 약 1,014,053천원이 소요됨
  - 각 시설의 인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를 기

준으로 산정함

- 복지시설의 경우, 월 기본급은 보건복지부 2017년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따른 각 직급별 12호봉을 기준으로 함
- 어린이집보육시설 보수총액: 보건복지부 2017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12호봉 기준

<표 4-17> 시설별 인건비(단위: 원)

시설	구분	인원	1인 월기본급	1인 연기본급	수당	1인 연봉급	연간 총인건비
육아보육센터	센타장	1	2,789,700	33,476,400	4,255,000	37,731,400	37,731,400
	보육교사	10	2,340,700	28,088,400	3,725,000	31,813,400	318,134,000
	취사부	1	1,891,700	22,700,400	3,010,000	25,710,400	25,710,400
	계	12					381,575,800
노인여가복지 + 주민문화복지	원장	1	3,626,000	43,512,000	5,318,000	48,830,000	48,830,000
	탐장	3	2,979,000	35,748,000	4,543,000	40,291,000	120,873,000
	선임사회복지사	2	2,707,000	32,484,000	4,216,000	36,700,000	73,400,000
	사회복지사	3	2,480,000	29,760,000	3,946,000	33,706,000	101,118,000
	평생교육사	2	2,480,000	29,760,000	3,946,000	33,706,000	67,412,000
	물리치료사	2	2,600,000	31,200,000	4,137,000	35,337,000	70,674,000
	영양사	1	2,600,000	31,200,000	4,137,000	35,337,000	35,337,000
	조리원	2	1,891,700	22,700,400	3,008,000	25,708,400	51,416,800
	관리인	3	1,500,000	18,000,000	3,139,000	21,139,000	63,417,000
	소계	18					632,477,800
총계	30					1,014,053,600	

□ 업무추진비 지출

- 해남문화복지센터의 업무추진비는 사례시설(화성시 나래울복합복지타운)의 인력 1인당 업무추진비 510,000을 가정함.
- 업무추진비를 산정하면 연간 약 15,300천원이 지출됨

<표 4-18> 업무추진비 지출(단위: 원)

구분	1인당 업무추진비	연간지출
업무추진비	510,000	15,300,000

□ 청소년수련관 지출

- 청소년수련관 지출은 청소년수련시설 통계연람에 나타난 재정운영 결과를 추정할 용하기로 함.
- 2014. 12 전남지역 청소년수련관 10개의 평균 총지출은 4억 6,759만원 임. 여기에 불가인상률을 고려하면 2016년 말 기준 4억7,546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음(앞의 표 참조).

□ 프로그램 강사료 지출

- 문화복지센터 내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주민문화복지시설 중 운영되는 각종 강습 프로그램은 강사를 활용하여 운영하며, 강사료 단가
- 프로그램 강사비로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약 3억36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표 4-19> 프로그램 강사료 지출(단위: 원)

프로그램명	1일강좌수	1강좌당 강사료	월지출	연간지출
일반프로그램(주3회)	40	30000	14,400,000	172,800,000
일반프로그램(주2회)	40	20000	6,400,000	76,800,000
컴퓨터프로그램(주3회)	20	30000	7,200,000	86,400,000
계				336,000,000

□ 운영비 지출

- 해남문화복지센터타 예상 소요인력을 고려하여 사례시설(화성시)의 연간 건물 운영 비용은 연간 약 571,805천원으로 추정

<표 4-20 > 운영비 지출(단위: 원)

구분	소요 인력	1인당 관리운영비(원)	연간지출(원)
운영비	30	19,060,169	571,805,070

□ 할인율

- 본 연구에서 사회적 할인율은 5.5%를 적용함

□ 분석기간

- 할인율 적용 기간은 모지이전 2년, 기본계획, 설계, 공사기간 등 약 2년, 준공 후 해남문화복지센터의 할인기간 30년을 합하여 총 34년으로 전제

③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 분석결과 순현재가치(NPV)는 -203,148천원, 수익성 지수는 0.13으로 1보다 작으므로, 재무적으로 부담이 되며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해남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위한 사업이므로 재무적 타당성보다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가 중요함

<표 4-21> 해남문화복지센터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분석지표	판단기준	지표값	비 고
PI	PI > 1	0.13	타당성 없음
IRR	IRR > k	-	-
NPV	NPV > 0	-203,148천원	타당성 없음

<표 4-22 > 해남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의 재무적 현금흐름

(단위: 천원)

연도	수입		지출		A-C	B-D
	총현금유입액(A)	할인액(B)	총현금유출액(C)	할인액(D)		
2018			937,500	937,500	(937,500)	(937,500)
2019			1,687,500	1,599,526	(1,687,500)	(1,599,526)
2020			4,250,000	3,818,423	(4,250,000)	(3,818,423)
2021			3,500,000	2,980,648	(3,500,000)	(2,980,648)
2022	1,158,335	935,027	2,412,620	1,947,507	(1,254,285)	(1,012,480)
2023	1,158,335	886,282	2,412,620	1,845,978	(1,254,285)	(959,697)
2024	1,158,335	840,077	2,412,620	1,749,743	(1,254,285)	(909,665)
2025	1,158,335	796,282	2,412,620	1,658,524	(1,254,285)	(862,242)
2026	1,158,335	754,769	2,412,620	1,572,060	(1,254,285)	(817,291)
2027	1,158,335	715,421	2,412,620	1,490,105	(1,254,285)	(774,683)
2028	1,158,335	678,124	2,412,620	1,412,422	(1,254,285)	(734,297)
2029	1,158,335	642,772	2,412,620	1,338,788	(1,254,285)	(696,016)
2030	1,158,335	609,263	2,412,620	1,268,994	(1,254,285)	(659,731)
2031	1,158,335	577,500	2,412,620	1,202,837	(1,254,285)	(625,337)
2032	1,158,335	547,393	2,412,620	1,140,130	(1,254,285)	(592,737)
2033	1,158,335	518,856	2,412,620	1,080,692	(1,254,285)	(561,836)
2034	1,158,335	491,807	2,412,620	1,024,353	(1,254,285)	(532,546)
2035	1,158,335	466,168	2,412,620	970,951	(1,254,285)	(504,783)
2036	1,158,335	441,865	2,412,620	920,332	(1,254,285)	(478,467)
2037	1,158,335	418,830	2,412,620	872,353	(1,254,285)	(453,523)
2038	1,158,335	396,995	2,412,620	826,875	(1,254,285)	(429,880)
2039	1,158,335	376,298	2,412,620	783,768	(1,254,285)	(407,469)
2040	1,158,335	356,681	2,412,620	742,908	(1,254,285)	(386,227)
2041	1,158,335	338,086	2,412,620	704,178	(1,254,285)	(366,092)
2042	1,158,335	320,461	2,412,620	667,467	(1,254,285)	(347,006)
2043	1,158,335	303,754	2,412,620	632,670	(1,254,285)	(328,916)
2044	1,158,335	287,919	2,412,620	599,687	(1,254,285)	(311,769)
2045	1,158,335	272,909	2,412,620	568,424	(1,254,285)	(295,515)
2046	1,158,335	258,681	2,412,620	538,791	(1,254,285)	(280,109)
2047	1,158,335	245,196	2,412,620	510,702	(1,254,285)	(265,506)
2048	1,158,335	232,413	2,412,620	484,078	(1,254,285)	(251,665)
2049	1,158,335	220,297	2,412,620	458,841	(1,254,285)	(238,545)
2050	1,158,335	208,812	2,412,620	434,921	(1,254,285)	(226,109)
2051	1,158,335	197,926	2,412,620	412,247	(1,254,285)	(214,321)
2052	1,158,335	187,608	2,412,620	390,756	(1,254,285)	(203,148)
합계	35,908,371	14,524,472	85,166,220	39,588,178	(49,257,849)	(25,063,706)

(2) 경제적 타당성 분석

□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개념

-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란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국가 전체적(사회적) 입장에서 측정하고 경제적 수익률을 계산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임.
- 해남문화복지센터는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모든 해남군민들의 삶의 질 개선위해 건립하는 것으로, 이동보육 위탁에 따른 경제활동, 노인에게 질병감소 및 사망감소의 편익과 체육·문화활동의 기회 등을 제공하는 공익적인 성격의 시설이므로 공익적인 측면에서의 비용과 편익을 국가 전체적(사회적) 입장에서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경제적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측정하고자 함.

□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방법

○ 편익·비용비율(B/C Ratio : Benefit·Cost Ratio)법

- 편익·비용 비율법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총 편익의 현재를 총비용의 현재로 나눈 값을 의미함.
- 즉 장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 할인율( $k$ )<sup>1)</sup>로 할인하여, 분석 기간 중 기대되는 총 편익과 총비용의 현재가치총액의 비율을 계산하는 지표로서 B/C Ratio가 1보다 클수록 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B/C \text{ Ratio} = \frac{\sum \frac{B_t}{(1+k)^t}}{\sum \frac{C_t}{(1+k)^t}}$$

$B_t$  : 연차별 총편익,  $C_t$  : 연차별 총비용  
 $k, t$ 는 각각 할인율, 기간을 의미함

○ 내부수익률(IRR : Internal Rate of Return)법

- 내부수익률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총 편익의 현재와 총비용의 현재를 같게 하는 할인율을 말하는데, 즉 어떤 사업(투자안)의 순현재가치(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로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음.

$$\sum \frac{B_t}{(1+r)^t} = \sum \frac{C_t}{(1+r)^t}$$

$B_t$  : 연차별 총편익,  $C_t$  : 연차별 총비용  
 $r, t$ 는 각각 할인율(내부수익률), 기간을 의미함

- 단일투자안의 경우에는 투자안의 IRR이 할인율보다 크면 그 투자안을 채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하며, 상호배타적인 복수의 투자안들의 경우에는 투자안의 IRR이 할인율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 IRR이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함.

○ 순현재가치(NPV : Net Present Value)법

- 순현재가치법은 경제성을 가늠하는 척도 중의 하나로서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총 편익을 할인율로 할인한 총 편익의 현재(現價)에서 총비용의 현재(現價)를 공제한 값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순현재가치는 대안선택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계산이 용이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됨.

$$NPV = \sum \frac{B_t}{(1+k)^t} - \sum \frac{C_t}{(1+k)^t}$$

$B_t$  : 연차별 총편익,  $C_t$  : 연차별 총비용  
 $k, t$ 는 각각 할인율, 기간을 의미함

- 단일투자안의 경우 투자안의 NPV가 0(零)보다 크면 그 투자안을 채택하고, 0보다 작으면 기각하며, 상호배타적인 여러 투자안들의 경우에는 0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 NPV가 가장 큰 투자안을 채택함.

□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판단기준

- 위에서 살펴 본 세 가지의 분석 방법 중 내부수익률법과 순현재가치법을 살펴보면, 내부수익률법에서 가정하고 있는 어떤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총 편익을 그 투자안의 IRR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반해 순현재가치법(NPV)은 사회적 할인율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하고 있어 순현재가치법(NPV)이 더 현실적이라고 볼

1) 개인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파악하고 이들 구성원들의 경제적 행태에 의해 할인율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으로 경제적타당성 분석에서의 할인율은 이 사회적 할인율을 의미함.

수 있음.

- 또한 내부수익률(IRR)은 투자로부터 얻는 수익률을 의미하는 반면 순현재가치법(NPV)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가치의 증가분을 나타내므로, 여러 개의 투자안이 존재하는 경우 내부수익률(IRR)의 크기에 따라 투자안을 선택하면 최적투자조합을 택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나, 순현재가치법(NPV)의 크기에 따라 투자안을 선택하면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투자조합을 택할 수 있음.
- 더구나 순현재가치법(NPV)은 해당 투자안의 기업 가치에 대한 공헌 정도를 험가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가치의 합계원칙을 적용할 수 있지만 내부수익률법은 그렇지 못하며, 내부수익률을 이용하여 투자가치를 평가할 경우 투자안에 따라서 복수(複數)의 내부수익률(IRR)이 존재하므로 투자의사결정이 어렵게 됨.
- 또 다른 방법인 편익·비용비율법도 투자안에 따라서 순현재가치법(NPV)과 서로 다른 평가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순현재가치법(NPV)에 의해 투자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순현재가치는 어떤 투자안으로부터 기대되는 경제적 공헌을 나타내고 있으나 편익·비용비율은 어떤 투자안의 상대적인 수익성을 비율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임.
- 이와 같이 각 방법들의 장·단점을 종합해 본 결과 경제성 분석은 세 가지 분석 방법을 모두 시행하여 결과를 제시하되, 타당성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순현재가치를 주된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표 4-23> 경제적 타당성 분석 판단기준

분석기법	판단	장점	단점
편익/비용 비율 (B/C Ratio)	B/C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용이, 사업규모 고려</li> <li>• 비용편익 발생시간의 고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익과 비용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li> <li>• 상호배타적 대안선택의 오류 발생 가능</li> </ul>
내부수익률 (IRR)	IRR > 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li> <li>• 타 대안과 비교가 용이</li> <li>• 평가과정과 결과 이해가 용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절대적 규모를 고려하지 않음</li> <li>• 복수의 IRR이 동시에 도출될 가능성 내포</li> </ul>
순현재가치 (NPV)	NPV >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선택 시 명확한 기준 제시</li> <li>• 장래발생편익의 현재가치 제시</li> <li>• 한계 순현재가치 고려, 타 분석 이용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의 어려움</li> <li>• 투자규모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li> </ul>

□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전체

- 편익이란,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해남문화복지센터 내에 설치된 자연공원 및 시설들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군민들에 의해 도출되는 것으로 센터 조성을 통해 발생하는 지역사회 후생의 증가를 의미함.
- 우선, 관련 시설을 이용하여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군민으로는 보육시설이용자,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 청소년수련관 이용자 및 예코공원 이용 주민들이 있음.
-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편익은 크게 금전적 수입과 비금전적 수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금전적 수입

- 금전적 수입은 재무성 분석의 현금유입 항목과 동일함  
- 연간 사업수입 : 1,158,334,555 원

② 비금전적 수입

□ 어린이집 이용자 편익

- 비금전적 수입으로는 자녀를 어린이 집에 맡김으로써 보호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편익이 발생함.
- 이에 따른 편익은 1,468,800,000원임

<표 4-24> 어린이집 이용자의 편익(단위: 원)

구분	정원	보호자수	여성급여총액(월)	여성급여총액(년)	연간편익
경제활동편익	60명	1명	2,040,000	24,480,000	1,468,800,000

자료) [www.kosis.kr](http://www.kosis.kr) 월급여총액: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2016)

□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주민 생활시설 이용자의 편익

- 노인여가활동이 증대되어 이에 따른 건강 증진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함
- 이러한 건강증진효과는 진료비의 절감과 사망의 감소로 나타나며, 이에 따른 편익은 각각 7억4865만원, 28억1697만원임

<표 4-25> 노인여가활동에 따른 진료비 절감 편익(단위: 원)

구분	프로그램이용자	6개 주요질환 감소율	1인당 진료비 (2016년 기준)	연간편익
진료비절감	11,520	2.295%	2,831,674	748,649,299

주 : 1. 6개 주요질환 감소율은 『9988복지센터 건립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를 참고함.  
 2.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건강보험통계연보 2016』함.

<표 4-26> 노인여가활동에 따른 사망 감소 편익(단위: 원)

구분	프로그램이용자	6개 주요질환 사망감소율	1인당 진료비 (2016년 기준)	연간편익
진료비절감	11,520	0.7653%	31,952,000	2,816,970,117

주 : 1. 6개 주요질환 감소율은 『9988복지센터 건립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를 참고함.  
 2. 1인당 GDP : 2015년 기준 (us 27,195), 환율 1,201원 : 2016년 기준임.

□ 해남청소년수련관 이용자의 편익

- 해남군 청소년수련관의 경제적 가치는 동 시설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개인들이 청소년수련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부여하는 화폐가치의 합” 으로 정의할 수 있음. 이러한 화폐가치의 합은 주어진 청소년수련관 제공 서비스에 대한 총 지불의사금액(WTP; willingness to pay)과 같음.
- 청소년수련관 경제적 편익 산정은 2013년 부천시에서 수행한 「부천시 소사청소년 수련관 건립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2013」에서 제시된 조건부가치 추정법(CVM) 지불가능금액을 바탕으로 경제적 편익을 산정함
- 「부천시 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제시된 가구당 지불가능금액은 22,951원/가구로 나타났으며, 부천시 소사 청소년수련관 연면적과 소비자 물가지수 보정을 통해 가구당 지불가능금액은 15,225원/가구로 나타남

<표 4-27> 지불가능의사 금액 추정 내용

구분	연면적(㎡)	지불의사가능금액(원)	2016년 12월 소비자물가 보정(원)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	7,664	22,951	23,659
해남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5,000	14,973	15,225

- 본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도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5년간 62,786백만원의 사회적후생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단계 1: 가구당 WTP에 전체 가구수를 곱함
  - 단계 2: 준공후 5년간만 연간 지불의사액을 반영함

<표 4-28> 해남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총 경제적 가치

연간 WTP추정치(원/가구)	해남군 가구수	총경제적가치(원)
15,225	35,091	534,260,475

<표 4-29>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연차별 경제적 가치

연도	연간 WTP(천원)	연간 WTP 현재가치(천원)
2022	534,264,631	431,267,355
2023	534,264,631	408,784,223
2024	534,264,631	387,473,197
2025	534,264,631	367,273,173
2026	534,264,631	348,126,230
합계	2,671,323,154	1,942,924,179

- 전체 편익
  - 각 편익을 산정하여 합산한 결과 신안공설묘지에 건립하는 해남문화복지센터의 총 편익은 으로 인한 81억3,568만원으로 산정됨.

<표 4-30> 해남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 전체 편익

구분	연간편익(원)	비고
현금수입	1,158,334,555	
보육가정 경제활동 편익	1,468,800,000	
진료비감소편익	748,649,299	
사망감소 편익	2,816,970,117	
청소년수련관 편익	1,942,924,179	
합계	8,135,678,150	

□ 비용산정

- 본 사업의 비용(공설묘지 이전비용과 초기투자비와 시설운영비)은 재무적 타당성 분석의 현금유출 항목과 동일함.

□ 할인율

-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사회적 할인율을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5.5%를 적용함.

□ 분석기간

- 분석기간은 신안공설묘지 재개발 기간(2년)과 센터 건립기간(2년)을 포함하여 총 34년으로 설정함.

□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순현재가치(NPV)는 62,425,897천원, 비용/편익(B/C)는 2.58으로 1보다 크고, 내부수익률(IRR)은 170.0%로 할인율(5.5%)보다 크므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해남문화복지센터는 공공성이 강한 시설물로 공공시설의 판단기준인 경제적 편익을 감안한 경제적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4-31>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분석지표	판단기준	지표 값	비고
편익·비용비율(B/C)	B/C > 1	2.58	타당성 있음
내부수익률(IRR)	IRR > k	170.0%	타당성 있음
순현재가치(NPV)	NPV > 0	62,425,897천원	타당성 있음

<표 4-32> 해남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의 경제적 흐름

(단위: 천원)

연도	수입		지출		A-C	B-D
	총현금유입액 (A)	할인액 (B)	총현금유출액 (C)	할인액 (D)		
2018			937,500	937,500	(937,500)	(937,500)
2019			1,687,500	1,599,526	(1,687,500)	(1,599,526)
2020			4,250,000	3,818,423	(4,250,000)	(3,818,423)
2021			3,500,000	2,980,648	(3,500,000)	(2,980,648)
2022	8,135,678	6,567,256	2,412,620	1,947,507	5,723,058	4,619,748
2023	8,135,678	6,224,887	2,412,620	1,845,978	5,723,058	4,378,908
2024	8,135,678	5,900,367	2,412,620	1,749,743	5,723,058	4,150,624
2025	8,135,678	5,592,765	2,412,620	1,658,524	5,723,058	3,934,241
2026	8,135,678	5,301,199	2,412,620	1,572,060	5,723,058	3,729,138
2027	8,135,678	5,024,833	2,412,620	1,490,105	5,723,058	3,534,728
2028	8,135,678	4,762,875	2,412,620	1,412,422	5,723,058	3,350,453
2029	8,135,678	4,514,573	2,412,620	1,338,788	5,723,058	3,175,785
2030	8,135,678	4,279,216	2,412,620	1,268,994	5,723,058	3,010,223
2031	8,135,678	4,056,129	2,412,620	1,202,837	5,723,058	2,853,292
2032	8,135,678	3,844,672	2,412,620	1,140,130	5,723,058	2,704,542
2033	8,135,678	3,644,239	2,412,620	1,080,692	5,723,058	2,563,547
2034	8,135,678	3,454,255	2,412,620	1,024,353	5,723,058	2,429,902
2035	8,135,678	3,274,175	2,412,620	970,951	5,723,058	2,303,225
2036	8,135,678	3,103,484	2,412,620	920,332	5,723,058	2,183,152
2037	8,135,678	2,941,691	2,412,620	872,353	5,723,058	2,069,338
2038	8,135,678	2,788,333	2,412,620	826,875	5,723,058	1,961,458
2039	8,135,678	2,642,969	2,412,620	783,768	5,723,058	1,859,202
2040	8,135,678	2,505,184	2,412,620	742,908	5,723,058	1,762,276
2041	8,135,678	2,374,582	2,412,620	704,178	5,723,058	1,670,404
2042	8,135,678	2,250,789	2,412,620	667,467	5,723,058	1,583,322
2043	8,135,678	2,133,449	2,412,620	632,670	5,723,058	1,500,779
2044	8,135,678	2,022,227	2,412,620	599,687	5,723,058	1,422,539
2045	8,135,678	1,916,802	2,412,620	568,424	5,723,058	1,348,378
2046	8,135,678	1,816,874	2,412,620	538,791	5,723,058	1,278,084
2047	8,135,678	1,722,156	2,412,620	510,702	5,723,058	1,211,454
2048	8,135,678	1,632,375	2,412,620	484,078	5,723,058	1,148,297
2049	8,135,678	1,547,275	2,412,620	458,841	5,723,058	1,088,434
2050	8,135,678	1,466,611	2,412,620	434,921	5,723,058	1,031,691
2051	8,135,678	1,390,153	2,412,620	412,247	5,723,058	977,906
2052	8,135,678	1,317,681	2,412,620	390,756	5,723,058	926,925
합계	252,206,023	10,2014,075	85,166,220	39,588,178	167,039,802	62,425,897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 결론

- 신안공설묘지의 재개발 기본구상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남군이 타시군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의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남군 신안공설묘지는 만장으로 묘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분묘 및 묘지관리 소홀 등으로 보건위생적 측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
  - 분묘조사결과 무연고비율이 65.8%로 나타났으며, 불법묘지 형태가 겹쳐 사용되고 있는 곳도 있음.
  - 불법 묘지, 상석 등도 혼재되고 있는 상황임 (상석 50기 소제함)
-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개발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재개발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이익은 1.6억~3.7억원 정도로 분석됨.
- 신안공설묘지를 단계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칭 해남문화복지센타를 건립하는 경우 재무적 수익성은 타당하지 않으나 주민 편의를 고려한 경제적 타당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재무적 수익성 :
    - 순현재가치 : -2억314만원, 수익성지수 0.13으로 1보다 작아 타당하지 못함
  - 경제적 타당성 :
    - 편익·비용비율이 2.58, 내부수익률 170.0%, 순현재가치 624억원으로 타당함
- 해남군 신안공설묘지는 지리적으로도 타시군의 공설묘지와는 달리 군청에서 불과 2km 떨어진 동산으로 인근지역에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 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원하는 주민들의 재개발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해남신안공설묘지의 재개발사업은 군민의 공설묘지재개발 욕구결과

- 체육공원, 자연학습장, 야영장, 체험학교 등의 공원화사업을 선호하는 비율이 36.3%, 청소년관련, 노인건강시설 등 복지시설타운 조성 21.8% 입을 반영하여 문화복지타운을 조성해야 할 것임.

- 한편, 공설묘지 인근에는 골프연습장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있어 군민 모두가 소득 및 건강수준과 상관없이 함께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사회통합형 문화복지타운으로 재개발하면 군민보건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므로 해남군은 해남추모공원 개장과 더불어 신안공설묘지를 폐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속히 재개발하도록 해야함.

### 2. 정책 제언

- 공설묘지의 재개발을 통한 공원화 방안은 해남군 주민들에게 생활복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해남추모공원과 연계한 공원화는 장사시설의 시너지 효과를 더 한층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임.
- 해남군은 신안공설묘지시설 정비를 통한 공원화 방안들을 계획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함.
  - 시설폐지 및 재개발을 수용 또는 거부라는 양자택일적 문제로 간주하기 보다는 시설이전 및 재개발에 따른 비용을 상쇄하고 나아가 새로운 혜택을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민에게 제공한다면 주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보다 용이할 수 있음.
    - 그러므로, 공설묘지시설 재개발은 인근 주민에게 사회적 필요성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기 보다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하여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임.
- 신안공설묘지 재개발은 도심 2km 이내에 있어 군민들의 문화복지시설 입지조건을 충족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 공설묘지의 정밀측량 및 주변 공간 확보 가능성, 투입 가능한 재원의 규모, 지역주민의 여론 등이 매우 중요함.
- 주민생활과, 교통,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즉, 복지적 측면과 관리·운영의 효율성, 규모경제 효과 등 경제적·행정적 측면이 균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기존의 공설묘지 시설에 주민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경우, 시설을 현대화하고 접근성과 함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공간으로서 환경 친화적인 시설을 입지시킴으로써 녹지를 비롯한 조경, 휴양, 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양호한 경관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한편, 특히 오래된 조상의 묘지를 개장하여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에 모시거나 개장 유골을 처리할 경우 해남추모공원시설을 편리하게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임
- 기존 장사시설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방치될 경우 많은 사회적 폐단을 발생시켜 왔으므로 해남추모공원은 지도 감독을 정례화하고, 시설 점검 등 사후관리에 대한 관계 법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끝으로 해남군은 중장기수급계획에서 나타난 묘지시설,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개선방안과 종합장사시설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할 것임.

부 록

## 해남군 추모공원 효율적 운영방안

### ◆ 추모공원 개요

- 위 치: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산 159-1 일원
- 사업기간 : 2012 - 2017년(5년간)
  - 서남권 광역화장장(연계협력)
  - 해남 공설추모공원
- 면 적: 87,886㎡
- 사업비: 195억원
  - 서남권 광역화장장 : 72.15 억원(국 56, 해남 8, 완도 4, 진도 4)
  - 해남 공설추모공원 : 123.59 억원(국 35, 특 8, 도 5, 군 75)
- 사업내용:
  - 서남권 광역화장장 : 화장장(화장로 3기), 봉안당 1동(9,660기)
  - 해남 공설추모공원 : 기반조성, 자연장지(12,316기), 봉안당 1동(5,957기), 봉안담(160기)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내용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지방비	
합계			9,962	500	9100	
3개군 협력사업	서남권 광역화장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7,215	5,592	1,623		
해남군 단독사업	해남 공설추모공원 (봉안시설, 자연장지)	12,359	3,570 (800)	459	7,530	

<해남추모공원 조감도>



<해남추모공원 공사현황: 2017. 8. 1>



◆ **해남추모공원 운영방안 비교분석**

- 종합장사시설의 관리운영 방식의 일반적인 변화추세는 ① 직영 → ② 직영기업(사업소) → ③ 전액출자·출연공사·공단 → ④ 민간부분참여허용 → ⑤ 민간참여폭확대 → ⑥ 완전민영화(법인형태)와 같은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임.
- 해남추모공원(가칭) 관리운영 방식의 선정은 관리운영 방식의 특성 비교 분석을 통해 적합한 관리방식을 선정하여야함.

1. 운영방안(운영주체)

- 해남추모공원(가칭) 관리운영 방안(주체)은 경영형태에 따라 직접경영방식, 간접경영방식, 위탁경영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 직접경영방식은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방식과 별도의 사업소를 두는 방식으로,
  - 간접경영방식은 지방공사·공단 또는 출자 및 출연법인을 통한 관리운영방식으로 구분

<부표 1> 경영형태별 운영방안

직접경영방식		간접경영방식	위탁경영방식
군청직영방식	사업소방식	공사/공단/제3섹터방식	민간위탁방식
조례	조례	조례/위탁규정	조례/위탁규정
↑↓	↑↓	↑↓	↑↓
<b>군청 담당계장</b>	<b>사업소장(현장)</b>	<b>이사장·사장(현장)</b>	<b>민간위탁자(현장)</b>
↓	↓	↓	↓
현장관리인(현장)	담당직원(현장)	담당직원(현장)	담당직원(현장)

주1) 굵은 글씨는 실질적인 운영책임자를 나타냄

2. 운영주체별 비교

1) 직접 경영방식

- 직접 경영방식은 공익성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장사시설에 대한 제정부담, 서비스공급과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리행사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담당하며, 경제적 효율성,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강조할 경우 채택하는 운영방식임.
- 직접 경영방식은 군의 담당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과 군청 산하에 사업소를 두고 관리운영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직영방식의 장점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적 목표로 한다는데 있음. 다만, 담당공무원의 업무가중 및 전문성 결여, 공직사회의 경직성 등이 한계임
- 특히, 시민들의 기호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또한 자체적 개발보다는 전문가의 제안 내지는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신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능동적 서비스 제공에 문제점과 소극적 운영에 따른 공공시설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사업소를 통한 직영방식 또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방침은 물론, 경제적 효율성에도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예산, 조직관리, 인사관리, 시설이용료 결정, 홍보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거의 전 분야에 대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음.
- 그러나 직접경영방식은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원활히 할 수 있고, 민간 위탁시 발생할 수 있는 채산성의 악화를 공적인 방식으로 보전할 수 있다는 점과 일반행정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2) 간접 경영방식

- 장사시설 중 공무원들의 직접 운영하기는 전문성과 기술성으로 취약한 장사시설에 대해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임.
  -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중 지역주민들의 복리업무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방식임. 공단이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가능한 사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인력운영, 시설의 개보수에서 민간영역의 특성이 작용하며, 수익성 확보도 필요하지만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공공업무를 대신 운영할 경우 유용한 방식임.

### 가) 공사·공단을 통한 운영

- 공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지방공사 및 공단의 규정에 의거 설립될 수 있으며,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한데 묶어 공사·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공사·공단의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지 못한다면 공공조직으로 관료적 비능률이 부각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뚜렷한 수익시설의 확보 없이 방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설을 관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이 또한 공적자금의 이중적 지출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공사·공단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민간의 경영효율성을 도입하고, 공사·공단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적 통제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나) 민관합자법인(제3섹터)을 통한 운영

- 수익성이 분명한 시설일 경우 민관합자법인인 주식회사 형태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민간합자법인형태는 자치단체가 대주주로서 참여하여 공공성을 살리는 동시에 민간의 자율적 경영을 보장함으로써 민간위탁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리는 방안임.

- 다만, 참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문제 및 참여 결정과정에서 투명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경영성과의 검증과 공공성 보장을 위한 지도 체계를 명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3) 민간위탁 관리운영 방식

- 장사시설 및 서비스 위탁계약(Service Contracting)은 운영주체만을 민간 위탁시키는 방식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통제와 감시가 필요한 사업에 적용됨.
  - 장사시설의 민간위탁은 수익성보다 수익성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며 책임보다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켜서 성과를 높이고자할 때 적용됨.
- 민간위탁 운영방식은 위탁운영자 운영권한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운영의 질서를 지키도록 서비스 표준만 수립하여 통제하고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 관리방식임.
  - 민간위탁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민간경제의 효율성을 공공사업에 도입하는 것으로, 공공시설 본연의 운영목적이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바 공익과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상반된 목적을 달성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 그러나 현재의 민간위탁의 장점은 경제적 효율성에서 나아가 민간기구의 전문성과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에서 찾을 수 있는데, 특히, 경직된 직영방식보다는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전문화된 시스템 및 인력, 공공서비스의 질 등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민간위탁업체의 채산성의 악화가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수익성부진이 약한 대부분의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부표 2> 서비스 공급형태의 원칙

유형	공급형태	공급원칙	비용부담	공급분야
공공서비스	공공단체	공평(강제)메카니즘	전액조세부담	경찰·소방
준공공서비스	공사·공단·제3섹터	효율(공정)메카니즘	사용료+위탁료	스포츠·문화
공익서비스	재단·기금	참가(증여)메카니즘	기부+이자수입	환경·인권
준당해군수서비스	공익법인	공존(책임)메카니즘	사용료+보조금	복지·교육
당해군수서비스	기업	수익(욕망)메카니즘	전액소비자부담	소비자·오락

### 3. 직영과 위탁의 비교

#### 1) 직영체제와 위탁체제의 비교

<부표 3> 직영체제와 위탁체제 비교

구분	직영체제	위탁체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단체(국가)가 사업주체가 되어 계획, 설계, 시공, 관리 등의 모든 업무를 실시하는 것</li> <li>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근무조직 개편 및 근무자 처우개선, 교육기회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주체는 지방자치단체(국가)가 유지함으로써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함</li> <li>시설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내지 민간회사에 위탁하여 민간의 경영시스템 도입을 통한 관리효율 향상 및 경비절감을 도모함</li> </ul>
법률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률적인 특별한 제약은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자격기준, 대가의 기준, 업체 선정방법 등)이 필요함</li> </ul>
초기투자 및 관리체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기투자비 및 관리체제에 있어 기존 조직을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탁을 위한 적절한 위탁비용의 산정이 필요함</li> <li>경영수익을 내기 위한 별도의 민간업체의 초기투자가 필요함</li> </ul>
관리조직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하간의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공무원의 특성상 조직적 측면의 문제는 없으나 공공부분의 독점성에 기인하는 관료조직의 비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음</li> <li>경험이 없는 공무원이 관리를 담당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단체는 위탁업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처리수준에 따른 관리감독업무만 수행함으로써 현행보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조직구성이 가능함</li> <li>자치단체와 위탁업체간의 업무 및 책임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므로 관리의 효율성이 있음</li> <li>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회사의 특성상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시설물에 대한 공공성 상실 및 부실화가 우려됨</li> </ul>

기술인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잡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전문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호경쟁을 통하여 전문기술력을 확보한 업체 선정이 가능함</li> </ul>
재정의 안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느 상황에서도 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안정적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를 통해 위탁업체의 손실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함</li> </ul>
비용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력성이 부족한 공공부분의 특성상 경영혁신 등을 통해 비용절감을 기대하기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력구성에 있어서 효율성을 가짐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옴</li> </ul>

#### 2) 운영주체별 장단점 분석

##### (1) 직영시 장·단점

<부표 4> 직영시 장·단점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에서 직접 운영 관리함으로써 비영리 추구의 공공성 확보 용이</li> <li>운영관리의 공정성 유지 가능</li> <li>지역 주민의 의견·요구사항수렴 용이</li> <li>지자체에서 시설 운영현황 파악이 용이</li> <li>관리체제 변경으로 인한 부가업무 및 절차의 필요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인력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운영 관리 미숙 및 시행착오 우려</li> <li>인건비의 과도한 소요</li> <li>공무원 증원이 예상되므로 추가인원 확보의 어려움</li> <li>빈번한 시간외 근무 등으로 인한 근무 기피 및 부담감 우려</li> <li>별도의 감사·감독의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성 우려</li> </ul>

##### (2) 직영체제 단점의 보완 방법

- 첫째, 전문인력의 채용, 탄력적인 인사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운영비 절감 기대
- 둘째, 위탁운영을 통해 공무원 증원 요소의 가중 감소와 빈번한 시간외 근무 등 업무 환경에 의한 공무원의 업무기피 현상 방지 가능
- 셋째,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지자체의 철저한 감사·감독으로 인해 대상 시설의 운영·관리 효율성 극대화 가능

(3) 위탁시 장단점

<표 5> 위탁시 장단점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인력 채용으로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가능</li> <li>· 운영효율성제고로 인한 운영비 절감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li> <li>· 민간업체가 운영관리 함으로써 공무원의 증원요소가 감축됨</li> <li>· 민간기업의 탄력적인 인사관리로 인한 효율성제고</li> <li>· 지자체가 운영에서 감시·감독으로 입장전환함으로써 시설운영 기능강화 기대</li> <li>· 전문집단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험 및 기술의 축적으로 인한 기술의 발전가능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 기대</li> <li>· 민간참여 기회 확대와 민간부문의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 수탁업체 선정의 어려움</li> <li>· 민간인 운영으로 인한 공공성 저하의 우려</li> <li>· 시설 운영에 관한 지자체의 개입권한 제한</li> <li>· 시설관리에 대한 부실 관리와 우려</li> <li>· 지자체와 수탁업체간의 적절한 관계수립의 어려움</li> <li>· 노사분규 및 수탁업체의 부도시 운영관리의 문제점 대두</li> </ul>

(4) 위탁체제 단점의 보완방법

- 첫째, 대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적합한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을 세우고 심사를 통해 선정.
- 둘째, 적합한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참여기술자 자격, 유사용역수행 실적, 신용도, 현재 업무 중첩도 등 기준을 세우고 충족되는 기업을 선정하여 부실기업의 선정 예방
- 셋째, 시설을 위탁할 시 2개 이상을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임. 왜냐하면 한 기업 내 노사분규 혹은 부도발생 시 다른 위탁업체가 문제가 발생한 시설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넷째, 위탁시 시설운영, 관리 및 실적보고 등 조항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하여 위탁업체가 시설운영의 취지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함.
- 다섯째, 위탁시 위탁업무처리지침 및 위탁용역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을 통해 시설에 대한 위탁업체의 부실관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자체와 위탁업체간 적정 수준의 관계를 수립 및 유지해야 함.

<부표 6> 장사시설 관리운영 방식의 비교분석

구분	직영시	민간위탁시	공단위탁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남군 직영하는 방식이며 화장 및 봉안서비스를 직접 운영</li> <li>· 서비스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추가업무 부담으로 인한 복리후생 등의 처우 개선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장, 봉안시설은 해남군이 운영하며, 장례식장 운영관리만 민간업체가 담당</li> <li>· 전문적인 기술 및 인적자원으로 서비스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유권은 해남군이 가짐</li> <li>· 해남추모공원(가칭) 운영관리만 지방공단이 위탁하여 담당</li> <li>· 전문적인 기술인적 자원 확보와 공익성 충족</li> </ul>
관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이나 보완사항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개정과 자격기준, 업체선정 및 운영방법 등의 기준을 설정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개정과 자격기준, 업체선정 방법 등의 기준을 설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함</li> </ul>
관리운영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효율적으로 직제인원 확보 필요하며, 비전문성으로 인한 운영이 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한의 인원으로 인력감축 효과를 볼 수 있음</li> <li>· 책임구분이 명확하며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li> <li>· 위탁비 이외의 이윤추구로 공익성을 저해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한의 인원으로 인력감축 효과를 볼 수 있음</li> <li>· 책임구분이 명확하며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li> <li>· 지방공단의 운영으로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음</li> </ul>
민원문제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들의 재정적 지원 문제로 민원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해결에는 다소 도움이 되지만 적절한 이윤이 보장되지 않으면 재정부담이 발생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사시설 부분 위탁과 인력 활용의 대안 제시로 지역주민들과 대화 및 절충의 가능성이 있음</li> </ul>

- 해남추모공원(가칭)을 직영할 경우는 장사시설 운영에 대한 직제인원 확보와 비전문적 서비스 경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 전체 장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의 경우는 민원해결에는 도움을 주지만 공익성을 저해할 수 있음.
- 공단 위탁의 경우 적정인원의 운영의 경영 효율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다만 24시간 상시 운영해야 하는 장례식장은 공단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가지고 지역주민협의체의 위탁운영의 혼합방식으로 각각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음.
- 그러나 해남군의 경우, 시설공단 등이 설립되지 않아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군이 직영하되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여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민원해결 및 갈등 최소화 방안

-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기존 시설 개·보수와 확장사업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어려움을 겪게 됨.
- 지역 주민과의 갈등과 민원문제는 지역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시설인 해남추모공원 사업의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해남군 장사수급 계획 및 장사정책의 효율적 집행에도 걸림돌로 작용함.

### 1. 해남추모공원(가칭) 설치에 있어서 갈등 요인

- 해남추모공원(가칭) 설치에 있어서 갈등 요인은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 재산피해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 주변 환경 및 교통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 이해관계자 참여와 보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 등의 요인이 있을 수 있음.
  -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 :
    - 해남추모공원이 비선호시설이 아니라 사후복지시설이며, 도시 기반시설로 지방 자치단체별 지역 내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주장
    - 장사시설은 혐오시설이며, 지역 내 설치 시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설치하는 절대로 안 된다는 주장사이의 갈등임.
  - 재산피해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 :
    - 해남추모공원은 공원화사업으로 주변지역을 함께 개발하기 때문에 재산피해 등 부동산 가치의 부정적 영향은 없다는 주장
    -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비선호시설이기 때문에 집값 등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
  - 주변 환경 및 교통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 :
    - 추모공원 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없으며 오히려 현대화와 공원화된 시설은 친환경적으로 조성될 수 있으며, 교통체증 문제는 장사시설의 규모를 줄이고 우회도로 건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
    - 타 지역의 장사시설은 여전히 장사시설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피해와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위험성이 상존하며, 특히 성수기 때마다 성묘객 때문

에 교통체증은 필연적이며 이로 인한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 된다는 견해 차이

-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참여와 보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 :
  - 해남추모공원의 영향 지역과 지역주민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참여 대상을 결정하기 어렵고, 이해관계자들의 통일된 의견을 수렴할 수 없다는 견해
  - 참여대상과 보상의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선정된 지역과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범위가 불충분하며, 결정내용의 객관성과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견해의 대립

### 2. 갈등해소 방안

- 해남추모공원은 기피시설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하나라는 인식이 정착화 될 때 보다 원만한 갈등해소의 단초가 될 것임
  - 해남추모공원(가칭)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해남군과 지역사회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장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회복지운동' 차원의 인식전환 운동 전개
  - 지속적인 대화와 홍보교육을 통해 해남추모공원(가칭)의 필요성을 인식시킴으로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 변화 시도를 통해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장사시설은 내용설계와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할 수도 있으며, 해남추모공원을 현대화 및 공원화에 노력을 기울이면 인식전환이 가능 할 수 있음.
- 해남추모공원의 설치환경 개선
  - 해남추모공원은 지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편의시설이므로 해남추모공원의 마스터 플랜 작성 단계에서 부터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현대화된 시설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계획한다.
  - 해남추모공원 외부환경은 일정 규모의 부지와 주변 자연환경, 그리고 지역사회와 일정한 조화가 요구됨.
    - 해남추모공원의 공원화 사업은 시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문제점, 개선해야 할 점 등을 상세히 조사 분석

## 해남추모공원 재정추계

- 해남추모공원의 확대사업은 기존의 시설권내에 있는 장사시설 설치를 승인하고 인접한 구역에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공원화로 종합화하는 방안임

□ 지역주민 참여와 투명성 제고

- 해남추모공원(가칭)의 설치와 공원화 사업은 절차적 공정성과 민주적 참여 절차를 통해 추진함
  - 일반적으로 장사시설 입지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된 요인은 타당성 검토 단계부터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참여가 없었기 때문임.
- 장사시설의 설치의 민원문제는 사후 갈등해결보다는 사전 갈등예방의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정보 공유로, 지역 주민들에게 장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권리, 책임 및 대안을 알리며, 장사시설에 대한 연구자료 등 장사시설 계획의 정보를 공유
  - 두 번째 단계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자문 과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 조건을 듣는 것은 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지역주민 들의 의견 수렴으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여론조사, 반상회, 공청회, 지역공동체 위원회의 자문 등
  - 세 번째 단계는 동반자 관계의 공감대 형성하는 것임.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동반자 관계는 주민 대표들이 지역공동체에 조직을 통해 해남추모공원(가칭) 운영계획을 평가하고, 협상에 의한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며, 시설의 완공 후 운영과정에도 주민참여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식

### 1. 화장진수 가정

< 부표 7 > 실제화장건 수(가정: 매년 3% 증가)

연도	관내				관외				총건수
	소계	시신	태아	개장유골		시신	태아	개장유골	
2018	1,366	647	5	714	74	35	1	38	1,440
2019	1,407	666	5	735	76	36	1	39	1,483
2020	1,449	686	5	757	79	37	1	40	1,528
2021	1,493	707	5	780	81	38	1	42	1,574
2022	1,537	728	6	804	83	39	1	43	1,621
2023	1,584	750	6	828	86	41	1	44	1,669
2024	1,631	773	6	853	88	42	1	45	1,719
2025	1,680	796	6	878	91	43	1	47	1,771
2026	1,730	820	6	904	94	44	1	48	1,824
2027	1,782	844	7	932	97	46	1	50	1,879
2028	1,836	870	7	960	99	47	1	51	1,935
2029	1,891	896	7	988	102	48	1	53	1,993
2030	1,948	922	7	1,018	106	50	1	54	2,053
2031	2,006	950	7	1,049	109	51	1	56	2,115
2032	2,066	979	8	1,080	112	53	2	57	2,178
2033	2,128	1,008	8	1,112	115	55	2	59	2,243
2034	2,192	1,038	8	1,146	119	56	2	61	2,311
2035	2,258	1,069	8	1,180	122	58	2	63	2,380
2036	2,326	1,101	9	1,216	126	60	2	65	2,452
2037	2,395	1,135	9	1,252	130	61	2	67	2,525
2038	2,467	1,169	9	1,290	134	63	2	69	2,601
2039	2,541	1,204	9	1,328	138	65	2	71	2,679
2040	2,617	1,240	10	1,368	142	67	2	73	2,759
2041	2,696	1,277	10	1,409	146	69	2	75	2,842
2042	2,777	1,315	10	1,451	150	71	2	77	2,927
2043	2,860	1,355	10	1,495	155	73	2	80	3,015
2044	2,946	1,395	11	1,540	160	75	2	82	3,105
2045	3,034	1,437	11	1,586	164	78	2	84	3,199

2. 화장율 및 화장자수 추이(2017-2045)

연도	화장률(%)			화장자수(명)			
	해남	완도	진도	해남	완도	진도	전체
2017	71.3	54.7	58.3	645	379	267	1,290
2018	73.5	56.7	60.4	682	401	283	1,366
2019	75.5	58.5	62.3	712	420	295	1,427
2020	77.2	60.2	64.0	714	421	296	1,431
2021	78.6	61.6	65.5	773	458	321	1,553
2022	79.9	63.0	66.8	805	479	335	1,619
2023	80.9	64.1	68.0	835	497	348	1,680
2024	81.8	65.2	69.0	855	511	357	1,723
2025	82.5	66.1	70.0	850	508	356	1,713
2026	83.1	67.0	70.8	900	541	378	1,820
2027	83.6	67.8	71.6	924	556	389	1,870
2028	84.1	68.5	72.2	948	572	399	1,920
2029	84.4	69.2	72.9	962	583	406	1,951
2030	84.7	69.8	73.5	957	580	403	1,940
2031	85.0	70.4	74.0	1004	612	424	2,040
2032	85.2	70.9	74.5	1,028	629	435	2,092
2033	85.3	71.5	75.0	1,052	646	446	2,144
2034	85.5	72.0	75.5	1,068	658	455	2,180
2035	85.6	72.5	75.9	1,065	657	454	2,176
2036	85.7	72.9	76.3	1,121	696	480	2,297
2037	85.7	73.4	76.7	1,146	714	492	2,352
2038	85.8	73.9	77.1	1,174	733	504	2,412
2039	85.9	74.3	77.5	1,195	750	515	2,461
2040	85.9	74.8	77.9	1,196	751	516	2,464
2041	85.9	75.2	78.3	1,263	798	548	2,609
2042	86.0	75.6	78.7	1,295	820	562	2,677
2043	86.0	76.1	79.0	1,326	841	576	2,743
2044	86.0	76.5	79.4	1,351	861	591	2,802
2045	86.0	76.9	79.8	1,340	862	592	2,794

3. 해남공설추모공원 재정추계

1) 서남권 광역화장장(화장시설, 제1봉안당) 재정추계

□ 수입추계

○ 화장장 사용료 수입

- 추계시 가정

- 관 내: **대인 7만원**, 사산아 2.4만원, 소인 4.4만원, 개장유골 3.1만원
- 관 외: 대인 50만원, 사산아 12.7만원, 소인 26.4만원, 개장유골 23.2만원
- ※ 관외 이용자는 관내이용자의 **5%** 가정(정읍의 경우 13.8% 수준임)<sup>2)</sup>
- 화장 후 유골 안치율은 해남군 조사결과(2017)에서 나타난 선호율 활용함
- ※ 화장건수 : 일평균 5건(시신, 사산아, 개장유골포함), 5건×360일=1,800건(년)
- ※ 공설봉안 **27.7%**, 사설봉안 19.3%, 자연장 41.3%, 유족동산 7.1% 임

<부표 10> 화장장수입(단위: 만원)

연도	관내			관외			화장장수입
	시신	사산아	개장유골	시신	사산아	개장유골	
2018	6,463	12	2213	1,749	13	882	9,394
2019	6,657	12	2280	1,801	13	908	9,676
2020	6,857	13	2348	1,855	13	935	9,966
2021	7,063	13	2419	1,911	14	963	10,265
2022	7,275	14	2491	1,968	14	992	10,573
2023	7,493	14	2566	2,027	15	1,022	10,890
2024	7,718	14	2643	2,088	15	1,053	11,217
2025	7,949	15	2722	2,150	16	1,084	11,554
2026	8,188	15	2804	2,215	16	1,117	11,900
2027	8,433	16	2888	2,281	17	1,150	12,257
2028	8,686	16	2975	2,350	17	1,185	12,625
2029	8,947	17	3064	2,420	18	1,220	13,004
2030	9,215	17	3156	2,493	18	1,257	13,394
2031	9,492	18	3250	2,568	19	1,295	13,796
2032	9,777	18	3348	2,645	19	1,333	14,210
2033	10,070	19	3448	2,724	20	1,374	14,636
2034	10,372	19	3552	2,806	20	1,415	15,075

2) 서남권 추모공원 운영사례: 광역화장장 개원이후 2015.11.13.~2017.7.12(1년 8개월간)  
 총 화장건수 8,957건 중 관내(정읍, 김제, 고창, 부안)가 92%인 8,285건임. 그 중 시신 4,250건 (47.4%) 중 관내(4시군)가 3,735건(87.9%), 개장유골 4,691건(52.3%) 중 관내(4시군)가 4,536건 (96.7%), 사산아 16건(3%) 중 관내(4시군)가 14건(87.5%)

2035	10,683	20	3658	2,890	21	1,457	15,527
2036	11,004	20	3768	2,977	22	1,501	15,993
2037	11,334	21	3881	3,066	22	1,546	16,473
2038	11,674	22	3998	3,158	23	1,592	16,967
2039	12,024	22	4118	3,253	24	1,640	17,476
2040	12,385	23	4241	3,350	24	1,689	18,000
2041	12,756	24	4368	3,451	25	1,740	18,540
2042	13,139	24	4499	3,554	26	1,792	19,096
2043	13,533	25	4634	3,661	27	1,846	19,669
2044	13,939	26	4773	3,771	27	1,901	20,259
2045	14,357	27	4917	3,884	28	1,958	20,867

○ 제1안봉안당 수입

- 추계시 사용된 사용료 가정

▪ 봉안당 : 관내 사용료 50만원(개인단,15년), 관외 사용료 100만원(개인단,15년)

※ 해남, 완도, 진도군은 관내요금 적용

※ 관외 이용자는 관내이용자의 5% 가정

※ 화장 후 유골을 해남공설봉안당에 안치하는 경우만 가정

▪ 제1봉안당, 9,660기 안치가능

<부표 11> 제1 봉안당 수입(단위: 만원)

연도	봉안당(사용료에 관리비 포함)		총계
	관내	관외	
2018	18,919	1,892	20,811
2019	19,487	1,949	21,435
2020	20,071	2,007	22,078
2021	20,673	2,067	22,741
2022	21,294	2,129	23,423
2023	21,932	2,193	24,126
2024	22,590	2,259	24,849
2025	23,268	2,327	25,595
2026	23,966	2,397	26,363
2027	24,685	2,469	27,154
2028	25,426	2,543	27,968
2029	26,188	2,619	28,807
2030	26,974	2,697	29,672
2031	27,783	2,778	30,562
2032	28,617	2,862	31,479
2033	29,475	2,948	32,423
2034	30,360	3,036	33,396
2035	31,270	3,127	34,397
2036	17,850	0	17,850
2037	0	0	0
2038	0	0	0
2039	0	0	0
2040	0	0	0
2041	0	0	0
2042	0	0	0
2043	0	0	0
2044	0	0	0
2045	0	0	0

□ 총수입

<부표 12> 총수입 추계

연도	화장장 수입	제1보안당 수입	총수입
2018	9,394	20,811	30,205
2019	9,676	21,435	31,111
2020	9,966	22,078	32,045
2021	10,265	22,741	33,006
2022	10,573	23,423	33,996
2023	10,890	24,126	35,016
2024	11,217	24,849	36,067
2025	11,554	25,595	37,149
2026	11,900	26,363	38,263
2027	12,257	27,154	39,411
2028	12,625	27,968	40,593
2029	13,004	28,807	41,811
2030	13,394	29,672	43,065
2031	13,796	30,562	44,357
2032	14,210	31,479	45,688
2033	14,636	32,423	47,059
2034	15,075	33,396	48,470
2035	15,527	34,397	49,925
2036	15,993	17,850	33,843
2037	16,473	0	16,473
2038	16,967	0	16,967
2039	17,476	0	17,476
2040	18,000	0	18,000
2041	18,540	0	18,540
2042	19,096	0	19,096
2043	19,669	0	19,669
2044	20,259	0	20,259
2045	20,867	0	20,867

□ 지출추계

○ 서남권광역화장장 지출 가정 (2018년도 예산편성안, 개보수 사업 제외)

목	내용	연봉	명	(단위:만원)
총계				6,7240
인건비	화장장	4,200만	3인	12,600
	보안	3,500만	1인	3,500
일반경비	사무관리비	-	-	4,800
	공공운영비	-	-	13740
	재료비	화장연료(LPG)구입		9,600
	기타자산취득 등	기타자산취득 등 (사무기기,책상 등)	18년 1회성 지출	5,000
화장로 개보수 사업	초기 3년까지			3,000
	3년 후부터			5,000
	5년후			10,000

○ 연도별 운영비 추정결과

(단위: 만원)

연도	인건비	일반경비	화장로 개보수사업	총지출
2018	13,500	33,140	3,000	49,640
2019	13,838	28,562	3,000	45,400
2020	14,183	28,991	3,000	46,174
2021	14,538	29,425	5,000	48,963
2022	14,901	29,867	5,000	49,768
2023	15,274	30,315	5,000	50,589
2024	15,656	30,769	10,000	56,425
2025	16,047	31,231	10,000	57,278
2026	16,448	31,700	10,000	58,148
2027	16,860	32,175	10,000	59,035
2028	17,281	32,658	10,000	59,939
2029	17,713	33,147	10,150	61,011
2030	18,156	33,645	10,302	62,103
2031	18,610	34,149	10,457	63,216
2032	19,075	34,662	10,614	64,350
2033	19,552	35,182	10,773	65,506
2034	20,041	35,709	10,934	66,685
2035	20,542	36,245	11,098	67,885
2036	21,055	36,789	11,265	69,109
2037	21,582	37,340	11,434	70,356

2038	22,121	37,900	11,605	71,627
2039	22,674	38,469	11,779	72,923
2040	23,241	39,046	11,956	74,243
2041	23,822	39,632	12,136	75,590
2042	24,418	40,226	12,318	76,962
2043	25,028	40,830	12,502	78,360
2044	25,654	41,442	12,690	79,786
2045	26,295	42,064	12,880	81,239

\* 인건비 공무원임금인상률 2.5% 적용  
 소비자물가상승률 1.5% 적용  
 기타 자산취 등(사무기기, 책상 등 구입은 2018년 1회성 지출)

□ 서남권광역화장장 향후 수치분석 결과

(단위 만원)

연도	수입	지출	차액	수지비율
2018	30,205	49,640	-19,435	60.8%
2019	31,111	45,400	-14,288	68.5%
2020	32,045	46,174	-14,129	69.4%
2021	33,006	48,963	-15,957	67.4%
2022	33,996	49,768	-15,772	68.3%
2023	35,016	50,589	-15,573	69.2%
2024	36,067	56,425	-20,359	63.9%
2025	37,149	57,278	-20,130	64.9%
2026	38,263	58,148	-19,885	65.8%
2027	39,411	59,035	-19,624	66.8%
2028	40,593	59,939	-19,346	67.7%
2029	41,811	61,011	-19,200	68.5%
2030	43,065	62,103	-19,038	69.3%
2031	44,357	63,216	-18,859	70.2%
2032	45,688	64,350	-18,662	71.0%
2033	47,059	65,506	-18,448	71.8%
2034	48,470	66,685	-18,214	72.7%
2035	49,925	67,885	-17,961	73.5%
2036	33,843	69,109	-35,266	49.0%
2037	16,473	70,356	-53,883	23.4%
2038	16,967	71,627	-54,660	23.7%
2039	17,476	72,923	-55,447	24.0%
2040	18,000	74,243	-56,243	24.2%
2041	18,540	75,590	-57,049	24.5%
2042	19,096	76,962	-57,865	24.8%
2043	19,669	78,360	-58,691	25.1%
2044	20,259	79,786	-59,526	25.4%
2045	20,867	81,239	-60,372	25.7%

2) 해남공설추모공원(화장시설, 제1봉안당, 제2봉안당, 자연장지) 재정추계

□ 수입추계

○ 화장장 사용료 수입

- 추계시 가정

- 관 내: **대인 7만원**, 사산아 2.4만원, 소인 4.4만원, 개장유골 3.1만원
- 관 외: 대인 50만원, 사산아 12.7만원, 소인 26.4만원, 개장유골 23.2만원
- ※ 관외 이용자는 관내이용자의 **5%** 가정(정읍의 경우 13.8% 수준임)<sup>3)</sup>
- 화장 후 유골 안치율은 해남군 조사결과(2017)에서 나타난 선호율 활용함
- ※ 화장건수 : 일평균 5건(시신, 사산아, 개장유골포함), 5건×360일=1,800건(년)
- ※ 공설봉안 **27.7%**, 사설봉안 19.3%, 자연장 41.3%, 유족동산 7.1% 임

<부표 15> 화장장수입(단위: 만원)

연도	관내			관외			화장장 수입
	시신	사산아	개장유골	시신	사산아	개장유골	
2018	6,463	12	2213	1,749	13	882	9,394
2019	6,657	12	2280	1,801	13	908	9,676
2020	6,857	13	2348	1,855	13	935	9,966
2021	7,063	13	2419	1,911	14	963	10,265
2022	7,275	14	2491	1,968	14	992	10,573
2023	7,493	14	2566	2,027	15	1,022	10,890
2024	7,718	14	2643	2,088	15	1,053	11,217
2025	7,949	15	2722	2,150	16	1,084	11,554
2026	8,188	15	2804	2,215	16	1,117	11,900
2027	8,433	16	2888	2,281	17	1,150	12,257
2028	8,686	16	2975	2,350	17	1,185	12,625
2029	8,947	17	3064	2,420	18	1,220	13,004
2030	9,215	17	3156	2,493	18	1,257	13,394
2031	9,492	18	3250	2,568	19	1,295	13,796
2032	9,777	18	3348	2,645	19	1,333	14,210
2033	10,070	19	3448	2,724	20	1,374	14,636

3) 서남권 추모공원 운영사례: 광역화장장 개원 이후 2015.11.13.~2017.7.12(1년 8개월간)  
 총 화장건수 8,957건 중 관내(정읍, 김제, 고창, 부안)가 92%인 8,285건임. 그 중 시신 4,250건 (47.4%) 중 관내(4시군)가 3,735건(87.9%), 개장유골 4,691건(52.3%) 중 관내(4시군)가 4,536건 (96.7%), 사산아 16건(3%) 중 관내(4시군)가 14건(87.5%)

2034	10,372	19	3552	2,806	20	1,415	15,075
2035	10,683	20	3658	2,890	21	1,457	15,527
2036	11,004	20	3768	2,977	22	1,501	15,993
2037	11,334	21	3881	3,066	22	1,546	16,473
2038	11,674	22	3998	3,158	23	1,592	16,967
2039	12,024	22	4118	3,253	24	1,640	17,476
2040	12,385	23	4241	3,350	24	1,689	18,000
2041	12,756	24	4368	3,451	25	1,740	18,540
2042	13,139	24	4499	3,554	26	1,792	19,096
2043	13,533	25	4634	3,661	27	1,846	19,669
2044	13,939	26	4773	3,771	27	1,901	20,259
2045	14,357	27	4917	3,884	28	1,958	20,867

○ 제1,2 봉안시설 수입

- 추계시 사용된 사용료 가정

▪ 봉안당 : 관내 사용료 50만원, 관외 사용료 100만원,

※ 제2봉안당은 해남군만 관내요금 적용

※ 관외 이용자는 관내이용자의 5% 가정

▪ 제1봉안당, 9,660기 / 제2봉안당, 5,957기 안치가능 ☞ 15,671기

<부표 16> 제1,2 봉안당 수입(단위: 만원)

연도	봉안당(사용료에 관리비 포함)		총계
	관내	관외	
2018	18,919	1,892	20,811
2019	19,487	1,949	21,435
2020	20,071	2,007	22,078
2021	20,673	2,067	22,741
2022	21,294	2,129	23,423
2023	21,932	2,193	24,126
2024	22,590	2,259	24,849
2025	23,268	2,327	25,595
2026	23,966	2,397	26,363
2027	24,685	2,469	27,154
2028	25,426	2,543	27,968
2029	26,188	2,619	28,807
2030	26,974	2,697	29,672
2031	27,783	2,778	30,562
2032	28,617	2,862	31,479
2033	29,475	2,948	32,423
2034	30,360	3,036	33,396
2035	31,270	3,127	34,397
2036	32,200	3,220	35,420
2037	33,175	3,317	36,492
2038	34,170	3,417	37,587
2039	35,195	3,520	38,715
2040	36,251	3,625	39,876
2041	37,338	3,734	41,072
2042	38,459	3,846	42,304
2043	39,612	3,961	43,574
2044	40,801	4,080	44,881
2045	42,025	4,202	46,227

○ 자연장지 수입

- 추계시 사용된 사용료 가정

- 자연장지 : 관내 사용료 45만원, 관외 사용료 100만원,  
해남군만 관내요금 적용
- 12,316기 안치가능

<부표 17> 자연장지 수입(단위: 만원)

연도	자연장지(용료에 관리비 포함)		총계
	관내	관외	
2018	25,387	2,821	28,208
2019	26,149	2,905	29,054
2020	26,933	2,993	29,926
2021	27,741	3,082	30,824
2022	28,573	3,175	31,748
2023	29,431	3,270	32,701
2024	30,314	3,368	33,682
2025	31,223	3,469	34,692
2026	32,160	3,573	35,733
2027	33,124	3,680	36,805
2028	34,118	3,791	37,909
2029	35,142	3,905	39,046
2030	36,196	4,022	40,218
2031	37,282	4,142	41,424
2032	38,400	4,267	42,667
2033	39,552	4,395	43,947
2034	40,739	4,527	45,265
2035	41,961	4,662	46,623
2036	43,220	4,802	48,022
2037	44,516	4,946	49,463
2038	45,852	5,095	50,947
2039	47,228	5,248	52,475
2040	48,644	5,405	54,049
2041	50,104	5,567	55,671
2042	51,607	5,734	57,341
2043	53,155	5,906	59,061
2044	54,750	6,083	60,833
2045	56,392	6,266	62,658

□ 총수입

연도	화장장	제1,2봉안	자연장지	총수입
2018	9,394	20,811	28,208	37,602
2019	9,676	21,435	29,054	38,730
2020	9,966	22,078	29,926	39,892
2021	10,265	22,741	30,824	41,089
2022	10,573	23,423	31,748	42,321
2023	10,890	24,126	32,701	43,591
2024	11,217	24,849	33,682	44,899
2025	11,554	25,595	34,692	46,246
2026	11,900	26,363	35,733	47,633
2027	12,257	27,154	36,805	49,062
2028	12,625	27,968	37,909	50,534
2029	13,004	28,807	39,046	52,050
2030	13,394	29,672	40,218	53,612
2031	13,796	30,562	41,424	55,220
2032	14,210	31,479	42,667	56,877
2033	14,636	32,423	43,947	58,583
2034	15,075	33,396	45,265	60,340
2035	15,527	34,397	46,623	62,151
2036	15,993	35,420	48,022	61,585
2037	16,473	36,492	49,463	62,428
2038	16,967	37,587	50,947	65,501
2039	17,476	38,715	52,475	68,666
2040	18,000	39,876	54,049	71,926
2041	18,540	41,072	55,671	75,283
2042	19,096	42,304	57,341	78,742
2043	19,669	43,574	59,061	82,304
2044	20,259	44,881	60,833	85,973
2045	20,867	46,227	62,658	89,752

□ 총지출

○ 해남공설추모공원 지출(안) 가정(2018년도 예산편성안, 개보수 사업 제외)

목	내용	연봉	명	(단위:만원)
총계				78,340
인건비	화장장	4,200만	3인	12,600
	봉안, 자연장지	3,500만	2인	7,000
	환경정비	3,800만	2인	7,600
일반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4,800
		공공운영비	-	13,740
	재료비	화장연료(LPG)구입		9,600
	기타자산취득 등	기타자산취득 등 (사무기기, 책상 등)	18년 1회성 지출	5,000
화장로 개보수 사업	초기 3년까지			3,000
	3년 후부터			5,000
	5년후			10,000

○ 연도별 운영비 추정결과

(단위: 만원)

연도	인건비	일반경비	화장로 개보수사업	총지출
2018	22,500	33,140	3,000	58,640
2019	23,063	28,562	3,000	54,625
2020	23,639	28,991	3,000	55,630
2021	24,230	29,425	5,000	58,655
2022	24,836	29,867	5,000	59,703
2023	25,457	30,315	5,000	60,771
2024	26,093	30,769	10,000	66,863
2025	26,745	31,231	10,000	67,976
2026	27,414	31,700	10,000	69,114
2027	28,099	32,175	10,000	70,274
2028	28,802	32,658	10,000	71,460
2029	29,522	33,147	10,150	72,819
2030	30,260	33,645	10,302	74,207
2031	31,016	34,149	10,457	75,623
2032	31,792	34,662	10,614	77,067
2033	32,587	35,182	10,773	78,541
2034	33,401	35,709	10,934	80,045
2035	34,236	36,245	11,098	81,580
2036	35,092	36,789	11,265	83,146
2037	35,970	37,340	11,434	84,744
2038	36,869	37,900	11,605	86,375

2039	37,791	38,469	11,779	88,039
2040	38,735	39,046	11,956	89,738
2041	39,704	39,632	12,136	91,471
2042	40,696	40,226	12,318	93,240
2043	41,714	40,830	12,502	95,046
2044	42,757	41,442	12,690	96,888
2045	43,826	42,064	12,880	98,769

\* 인건비 공무원임금인상률 2.5% 적용  
 소비자물가상승률 1.5% 적용  
 기타 자산취 등(사무기기, 책상 등 구입은 2018년 1회성 지출)

□ 서남권광역화장장 향후 수지분석 결과

(단위 만원)

연도	수입	지출	차액	수지비율
2018	37,602	58,640	-21,038	64.1%
2019	38,730	54,625	-15,894	70.9%
2020	39,892	55,630	-15,738	71.7%
2021	41,089	58,655	-17,567	70.1%
2022	42,321	59,703	-17,381	70.9%
2023	43,591	60,771	-17,180	71.7%
2024	44,899	66,863	-21,964	67.2%
2025	46,246	67,976	-21,731	68.0%
2026	47,633	69,114	-21,480	68.9%
2027	49,062	70,274	-21,212	69.8%
2028	50,534	71,460	-20,925	70.7%
2029	52,050	72,819	-20,769	71.5%
2030	53,612	74,207	-20,595	72.2%
2031	55,220	75,623	-20,403	73.0%
2032	56,877	77,067	-20,191	73.8%
2033	58,583	78,541	-19,958	74.6%
2034	60,340	80,045	-19,705	75.4%
2035	62,151	81,580	-19,429	76.2%
2036	64,016	83,146	-19,130	77.0%
2037	65,936	84,744	-18,808	77.8%
2038	67,911	86,375	-18,464	78.6%
2039	69,941	88,039	-18,098	79.4%
2040	72,026	89,738	-17,712	80.2%
2041	74,166	91,471	-17,305	81.0%
2042	76,361	93,240	-16,879	81.8%
2043	78,611	95,046	-16,435	82.6%
2044	80,916	96,888	-15,972	83.4%
2045	83,276	98,769	-15,493	84.2%

## 해남추모공원 운영관리지침

### Ⅰ 해남추모공원 운영관리지침

#### 1. 사용자의 자격, 대상 등

- 해남군수는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 대상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 1) 화장시설

###### □ 이용자 범위

- 화장시설은 수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과 그 밖의 지역거주 사망자와 외국인 사망자에 대해서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음.

- 다만, 화장시설 사용에 있어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① 국가유공자등에우뒀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 ② 신안공설묘지에서 해남추모공원을 이용 하고자 하는자
  - ※ 2020년 12월말까지 한시적 적용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④ 타지역 주민

##### 2) 봉안시설

###### □ 이용자 범위

- 봉안당 이용자는 사망일 현재 관내지역 및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자
  - 단, 신안공설묘지에서 해남추모공원 봉안당으로 봉안하고자 하는자는 2020년 12월말까지 봉안 완료를 전제로 허가한다.

#### 2. 사용허가 및 신청

###### □ 사용허가

-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 1) 화장장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호 또는
- 2) 봉안시설의 사용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및 이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3) 사용기간 연장 : 별지 제2호 서식
- 4) 당해 군수는 위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3. 사용료

구분	내용	이용금액	
		관내	관외
화장 시설	만 15세 이상	70천원	499천원
	만 15세 미만	44천원	264천원
	사산아	24천원	127천원
	개장유골	31천원	232천원
봉안 당	개인단 (15년)	500천원	1,000천원
	부부단 (15년)	1,000천원	2,000천원

\* 이용금액에는 관리료가 포함됨

#### 4. 사용료 등의 감면

- 해남추모공원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해남추모공원 등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원가수준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으로 결정한다.
- 군수는 저소득시민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사용료·관리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당해군수가 정한 지역의 주민을 제외한 타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사용료·관리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사용료·관리비 및 감면대상과 사용료·관리비를 다르게 정하는 대상 및 납부방법 등은 3.사용료참고

#### 5. 사용권의 승계

- 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 해남추모공원에서 시체 또는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된

다.

- 사용권은 당해군수으로부터 사용권 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고, 매매·양도·입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6. 사용허가 취소

### □ 사용허가의 취소

- 시설의 분할된 표준 기당 사용면적을 초과한 경우
- 사용자의 주소나 상속으로 인한 사용권 승계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시설의 신·증설·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재해의 예방·복구 또는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

### □ 사용허가의 취소의 취소절차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사용허가의 취소의 취소에 따른 수행

- 사용자는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분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야 한다.
- 군수는 위의 기간내에 사용자가 분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분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 산골을 진행 할 수 있다.

## 7. 시설관리 위탁운영

### □ 운영위탁

- 군수는 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수탁기관에서는 운영의 효율과 시민편의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군수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다.

### □ 운영지원

- 군수는 운영위탁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법인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 운영규정

- 수탁자는 묘지등의 관리에 관하여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 □ 지도·감독

-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 8. 수탁자의 의무

-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규정에 의한 운영지원금 등을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과 당해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9. 위탁의 취소 등

- 수탁자가 시설관리 운영위탁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 원상 복구 및 변상

□ 원상복구 명령대상

○ 군수는 다음의 경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 ①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 ② 봉안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 ③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④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원상복구 절차 및 방법

-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30일간의 기간을 주어 원상복구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군수는 사용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보 및 시 정보통신망에 공고한 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변상

○ 군수는 사용자가 공설장사시설의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의 원상복구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11. 사용기간

1) 봉안시설

-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한번에 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다만, 무연고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한다.

2) 봉안묘역

□ 사용기간

- 일반 봉안묘역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한번에 5년씩 연장할 수 있다.
- 수목장(1㎡)과 화초장(1㎡) 사용기간도 같이 적용함
- 종중묘역의 사용기간은 최초 15년으로 하되,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한번에 15년씩 연장할 수 있다.
- 만약 연장 신청이 없을 경우는 운영자측에서 산골처리함

12. 자연장 방법

- 자연장 안치시 화장을 전제로 골분을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유품 매몰 불가)

13. 자연장의 시설기준

- 수목장은 나무 1그루당 10기까지 허용한다.
- 개인표석(명단석) 사용은 금지 한다.

14. 무연묘역에 대한 사용기간 등

○ 무연고 봉안의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한다.

15. 사용기간이 만료된 묘역의 처리

- 사용기간이 경과한 무연고 분골은 운영자측에서 산골처리함
- 유연고 분골은 연고자로부터 봉안 인수의 요구가 없거나 연장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당해군수는 3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무연고 분골로 간주함

16. 봉안당의 안치기준

-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사용하도록 한다.
- 사전예약이 불가하며, 신청된 시점을 기준으로 배정하여 전산관리

17. 각종서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7.20.>

## 시신·유골 [ ] 매장 [ ] 화장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장소	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매장 또는 화장 장소	분 묘 설 치 연 월 일	.	.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당해군수·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음·면·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	---

제 호				
시신·유골 [ ] 매장 [ ] 화장 신고증명서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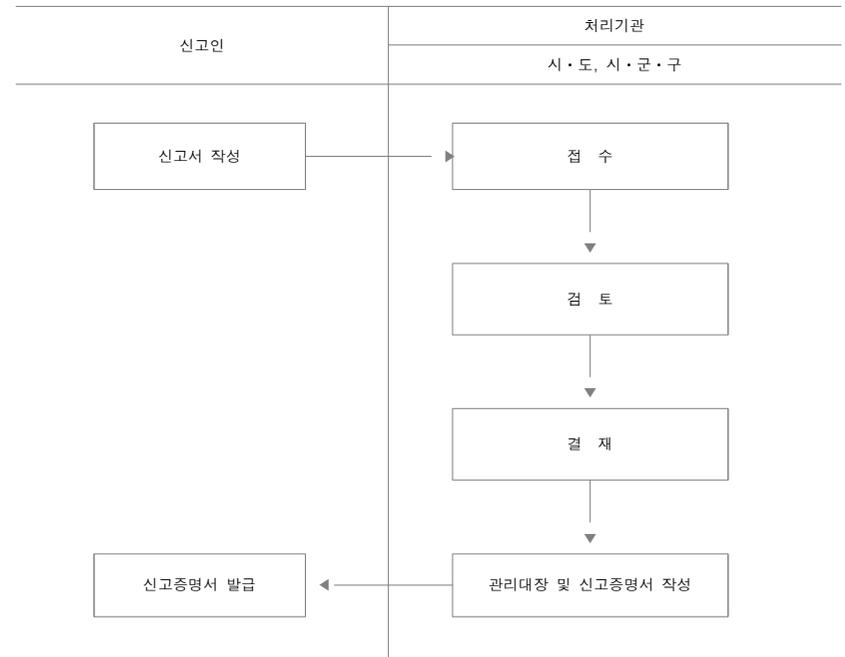
**시·도지사, 당해군수·군수·구청장**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7.20.>

## 죽은 태아 [ ] 매장 신고서 [ ] 화장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사산장소		임신주수	
	사산 연월일		사산사유	
	매장 또는 화장 장소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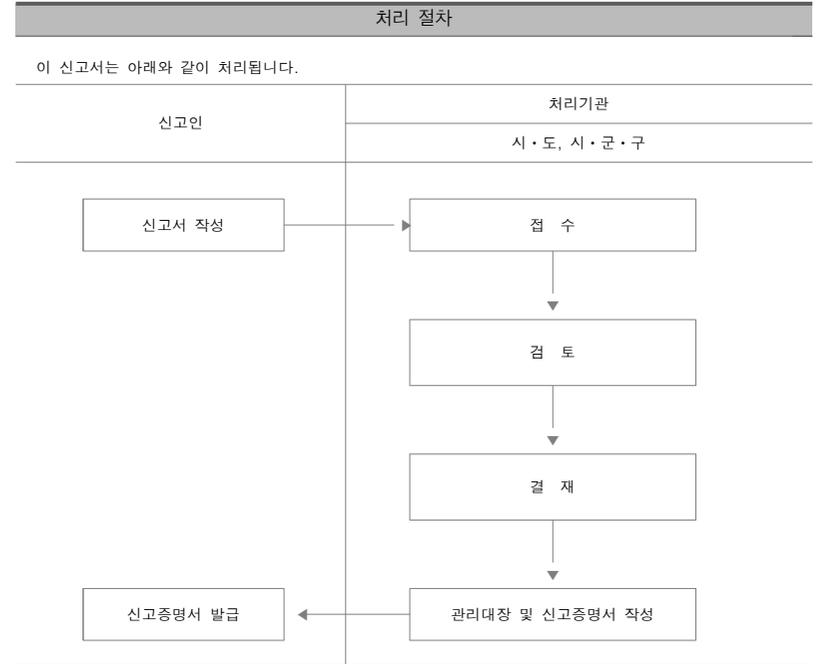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당해군수·군수·구청장 귀하

제 호				
죽은 태아 [ ] 매장 신고증명서 [ ] 화장				
죽은 태아	임신주수	사산사유	사산연월일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당해군수·군수·구청장				관인

210mm × 297mm [백상지 80g/㎡]

(뒤쪽)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8. 30.>

## 개 장 [ ] 신고서 [ ]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 개장신고 : 2일 · 개장허가 : 3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성 명</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주민등록 번호</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 10%;">사망연월일</td> <td style="width: 10%;"></td> </tr> <tr> <td>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td> <td></td> <td>매장 또는 봉안연월일</td> <td></td> <td></td> <td></td> </tr> <tr> <td>개장장소</td> <td></td> <td>개장방법 (매장· 화장등)</td> <td> <input type="checkbox"/> 매장 → 매장    <input type="checkbox"/> 매장 → 화장  <input type="checkbox"/> 매장 → 봉안    <input type="checkbox"/> 매장 → 자연장  <input type="checkbox"/> 봉안 → 매장                 </td> <td></td> <td></td> </tr> <tr> <td>개장의 사유</td> <td></td> <td>매장(봉안) 기간</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able>		성 명		주민등록 번호	-	사망연월일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개장장소		개장방법 (매장· 화장등)	<input type="checkbox"/> 매장 → 매장 <input type="checkbox"/> 매장 → 화장 <input type="checkbox"/> 매장 → 봉안 <input type="checkbox"/> 매장 → 자연장 <input type="checkbox"/> 봉안 → 매장			개장의 사유		매장(봉안) 기간		~			
성 명		주민등록 번호	-	사망연월일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개장장소		개장방법 (매장· 화장등)	<input type="checkbox"/> 매장 → 매장 <input type="checkbox"/> 매장 → 화장 <input type="checkbox"/> 매장 → 봉안 <input type="checkbox"/> 매장 → 자연장 <input type="checkbox"/> 봉안 → 매장																								
개장의 사유		매장(봉안) 기간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성 명</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주민등록 번호</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 10%;">사망자와의 관계</td> <td style="width: 10%;"></td> </tr> <tr> <td>주 소</td> <td></td> <td>전화번호</td> <td></td> <td></td> <td></td> </tr> </table>		성 명		주민등록 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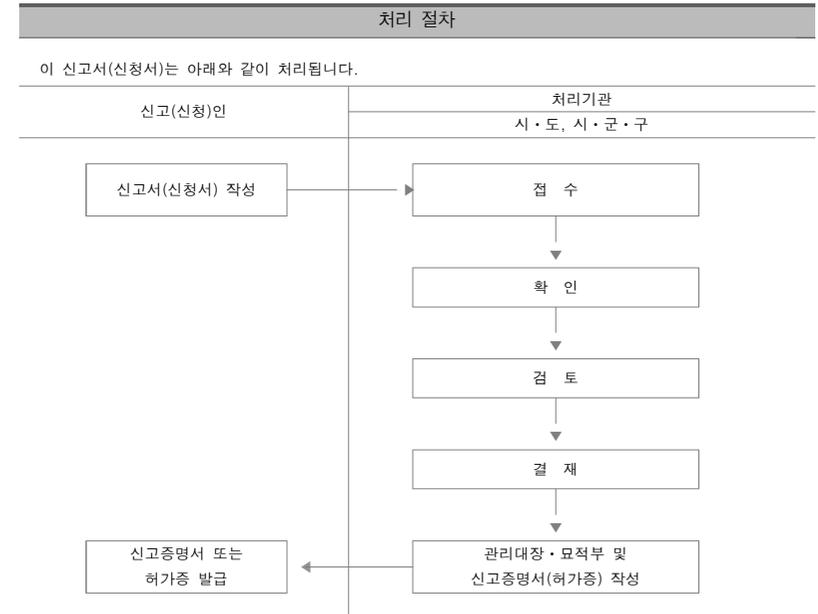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신청인)**  
**시·도지사, 당해군수·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개장신고의 경우	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묘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출서류	개장허가의 경우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묘문 또는 공고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제 호					
개 장 [ ] 신고증명서 [ ] 허가증					
사망자	성 명		사망연월일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개 장 장 소		개 장 방 법	[ ] 매장 [ ] 화장	
신고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p>「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시·도지사, 당해군수·군수·구청장</b> <span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2px;">관인</span></p>					

(뒤쪽)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7.20.>

###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화장시설·봉안당	명칭	<input type="checkbox"/> 화장시설 <input type="checkbox"/> 가족봉안당 <input type="checkbox"/> 종중·문중봉안당 <input type="checkbox"/> 종교단체봉안당 <input type="checkbox"/> 법인봉안당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봉안당지구수		
	설치연월일	화장로수		
	설치변경 사유	<input type="checkbox"/> 설치·관리인 <input type="checkbox"/> 시설		
	설치변경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설치자	성명/종중·문중, 종교단체, 법인명	생년월일/법인허가번호	
관리인	주소/법인등 주소	지택/법인등 전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당해군수·특별자치도지사·당해군수·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사설화장시설	1. 실측도 및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상하수도,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6. 종중·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7. 실측도 및 구적도 8. 사용할 봉안당 건물·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9. 종중·문중 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 임을 증명하는 서류 10.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가족·문중·종중·교단체 봉안당	1.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봉안당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 3.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부 등본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지적도 및 임야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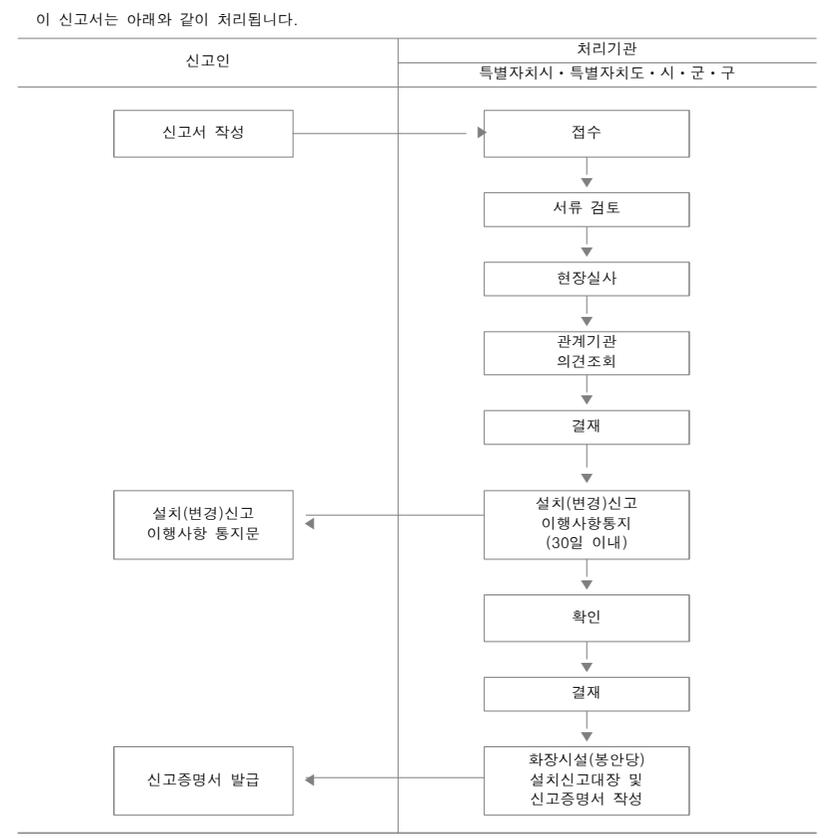
(뒤쪽)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 절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7.20.>

### 봉안시설(봉안요 · 봉안탑 · 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 개인, 가족, 종중·문중 : 10일 · 종교단체, 법인 : 30일
------	-----	-----	---

봉안요 · 봉안탑 · 봉안담	명칭	[ ] 개인 또는 가족봉안요(탑·담) [ ] 종교단체봉안요(탑·담)	[ ] 종중·문중봉안요(탑·담) [ ] 법인봉안요(탑·담)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봉안시설기수/안치구수	
	설치연월일	시설물설치 (법인 제외)	[ ] 비석 [ ] 상석 [ ] 기타 석물 [ ] 없음
	설치변경	설치변경사유 [ ] 시설 [ ] 설치·관리인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설치자	성명/종중·문중, 종교단체, 법인명	생년월일/법인허가번호	
	주소/법인 등 주소	자택/법인 등 전화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봉안요(탑·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당해군수 · 특별자치도지사 · 당해군수  
· 군수 · 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개인 또는 가족봉안요(탑·담)	1. 평면도 2. 봉안요(탑·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요(탑·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종중 또는 문중봉안요(탑·담), 종교단체의 봉안요(탑·담)	1. 봉안요(탑·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요(탑·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요(탑·담)의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봉안요(탑·담)	1.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요(탑·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요(탑·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요(탑·담) 조성 및 공영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요·가족봉안탑·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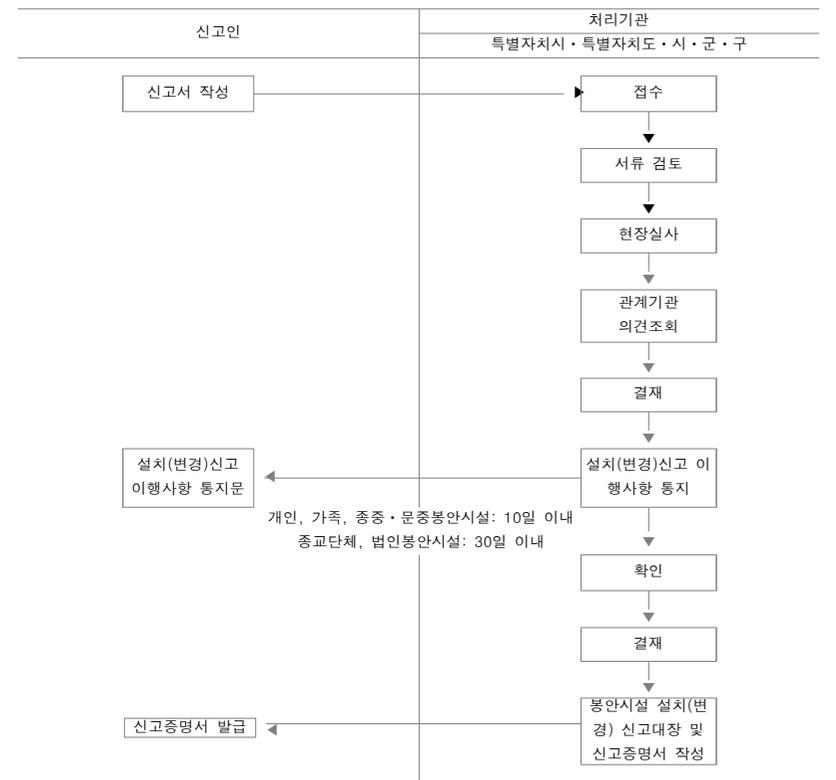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7.20.>

제 호			
<input type="checkbox"/> 화장시설 <input type="checkbox"/> 가족봉안당 <input type="checkbox"/> 종중·문중봉안당 설치(변경)신고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종교단체봉안당 <input type="checkbox"/> 법인봉안당			
소재지			
면적		설치기/구수	/
설치변경내용			
대표자	성명 (종중·문중, 종교단체·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 ( )
	주소 (종중·문중, 종교단체·법인 주소)	전화번호 (종중·문중, 종교단체·법인 전화번호)	( )
<p>「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봉안당(화장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봉안당(화장시설)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특별자치당해군수·특별자치도지사·당해군수·군수 · 구청장</p>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관인</div>			

210mm×297mm[백상지 150g/m<sup>2</sup>]

[별지 제12호서식]

매장·화장·개장신고(허가) 관리대장								
신고(허가)번호	신고(허가)일자	매장 화장 개장 구분	매장 화장 개장 장소	사유 및 특기사항	신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sup>2</sup>)

[별지 제13호서식]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설치· 조성허가(신고) 관리대장									
허가 (신고) 번호	허가 (신고) 일자	시설 구분	허가 (신고) 장소	허가 (신고) 면적	설치·조 성 기(구) 수 및 예 정 기(구) 수	설치·조 성 현황 설치 개요	설치·조성자		
							성명 (법인등 명칭)	주민등록 (법인허가 ) 번호	주소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sup>2</sup>)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 8. 30.>

제 호			
<b>[ ] 시신</b> <b>[ ] 죽은 태아 매장· 화장· 봉안· 자연장 증명서</b> <b>[ ] 개장유골</b>			
사 망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나이) - (세)
	주소		전화번호
	사망장소		사망연월일 사인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소재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전화번호
죽은 태아	매장· 화장· 봉안· 자연장 일시		매장· 봉안· 자연장 위치(관리번호)
	사산연월일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소재지
개장 유골	매장· 화장· 봉안· 자연장 일시		매장· 봉안· 자연장 위치(관리번호)
	성명		개장사유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소재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전화번호
신 청 인	매장· 화장· 봉안· 자연장 일시		매장· 봉안· 자연장 위치(관리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기타 시신 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b>○○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관리인</b> <span style="float: right;">인</span>			

210mm×297mm[백상지 150g/m<sup>2</sup>]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6. 8. 30.>

<b>매장· 화장· 봉안· 자연장 관리대장</b>					
※ 해당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묘지· 화장시설 ·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연월일		
	대표자	신고시 설명	운영주체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사망장소	사망연월일		사인(병명)	
	매장· 화장신고번호		매장· 화장· 봉안· 자연장 연월일		
	매장기간 봉안기간 자연장기간	~	매장· 봉안· 자연장 위치 (관리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매장· 봉안(안치)· 자연장 장소의 사진			특기사항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6.1.29.>

(제1쪽)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용] <b>가 격 표</b>			
1. 시설명 / 대표자명 :	(사업자번호 : )		
2. 소재지 :	(전화번호 : )		
3. 관할 행정기관 :			
4. 가격(요금)표			
사용료·관리비	항 목	요금	세부내용
	반환기준과 방법		
시설물	항목	가격	세부내용
장례용품	품명	판매가격	규격/재질/원산지/생산지/제조방법 등
기타	항 목	가격	세부내용

※ 장례용품(관, 수의, 유골함 등), 기타(세트 가격, 식사, 제사음식 등) 등 해당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1의2] <신설 2016.1.29.>

가격표의 게시·등록 방법(제15조제4항 및 제20조의3 관련)

1. 법인표지·사설화장시설·사설방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판 또는 풋말 등을 사용하여 게시하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당해군수등에게 신고한 법인표지·사설화장시설·사설방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

나. 상석·비석 등 시설물과 장례용품의 품목별 판매가격과 원산지 등

다. 유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 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

라.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관할행정기관,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2. 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판 또는 풋말 등을 사용하여 게시하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가.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각종 행위별 수수료

나. 장례용품의 품목별 판매가격과 원산지 등

다. 유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 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

라.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관할행정기관

3. 가격표는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고,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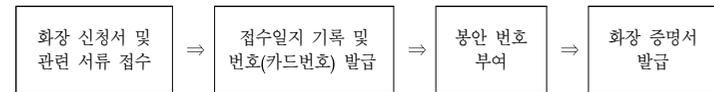
② 운영관리 매뉴얼

1. 화장접수

가. 관련 법규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35조, 제37조
- 00시 장사등에관한조례
- 00시 장사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나. 업무 흐름도



다. 화장 접수 시 유의사항

- 화장 접수 시 기본 서류는 사망진단서이며 진단서에 사망의 종류, 사망일시, 고인의 주소지를 확인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 화장 가능 단, 임신 7개월 미만의 사태는 예외
- 외인사의 경우 검사 지휘서 첨부
- 개장유골 화장 시 개장 신고 필증, 말소자 등본 첨부
- 타시·도민의 경우 봉안당 안치 불가

■ 화장 접수 구비서류

구 분	화장신청서	화장신고서	유품인도 신청서	산골사용 신청서
봉안당 안치	✓	✓		
00 산골	✓	✓		✓
외부 반출	✓	✓	✓	

■ 감면 구비서류

구 분	구비 서류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 증명서
국가 유공자	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 서류
참전 용사	참전용사증 또는 증명 서류
지역 주민	사망진단서와 주소일치

■ 자연장관련 상담 사항

1. 먼저 고인이 00 군민인지 확인
2. 00시 장사등예관한조례 제정 이전에는 자연장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인식시킴. 단 종중묘역에 한하여 이장 가능
3. 지금부터 사용되는 묘는 최장 00년만 사용가능 (15년+0년+0년+0년)
4. 자연장 사용료는 최초 15년에 00만원, 이후 연장신청시 사용료는 현재 조례상 책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후 변경 가능.
5. 자연장 전일 까지 신청 및 묘지번호 확인 해야함!
6. 자연장 작업은 주문후 1개월마다 명단석을 표시함을 알림

2. 공원관리

가. 공원관리 기본원칙

□ 식물에의 배려

- 작업에 있어서는 대상식물의 특성, 활력 및 환경조건 등을 감안하여 생명체로서의 식물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애정을 가지고 작업을 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 시행시기

- 각 작업은 날씨,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담당직원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재료의 관리

- 반입한 재료는 손상, 오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나. 잔디밭 관리

□ 잔디깎기

- ① 잔디 깎기는 잔디밭 내에 있는 수목, 관목, 시설 등을 손상치 않게 주의하여 불수예치(不穗刈取), 예취불량이 없도록 균일하게 베어낸다.
- ② 잔디 깎는 높이는 담당직원과 협의한다.
- ③ 베어낸 잔디는 지정장소에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함과 동시에 깎은 장소를 깨끗이 청소한다.
- ④ 가장자리는 담당직원과 협의 후 대상관목시설 등에 포복경이 침입하지 않게 하고 관목류에 있어서는 수관에서 10cm 내외의 폭으로 수직으로 절단한다.

□ 시비

- 소정의 시비량을 잔디면에 골고루 균일하게 뿌린다.

□ 제초

- ① 잔디를 손상치 않도록 제초 fork 등을 사용해서 뿌리까지 신중하게 뽑아낸다.
- ② 뽑아낸 잡초는 매일 지정장소에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동시에 제초흔적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 제초제 살포

- ① 희석액은 지정의 농도로 되도록 정확히 희석혼합하고 지정량을 균일하게 뿌린다.
- ② 살포일은 바람, 일조, 강우 등의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 ③ 잔디밭 내에 관목, 초화, 이용자 및 인접한 땅 등에 날아가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해서 살포한다.

□ 땃밭주기

- 땃밭은 식물의 뿌리, 자갈부스러기, 적토 등이 없게 하여 2cm는 정도의 체로 쳐서 땃밭용토로 사용한다. 토양개량제 및 비료를 혼합하는 경우는 지정의 혼합물이 되도록 신경써서 혼합한다.
- 땃밭용토는 지정두께로 균일하게 충분히 넣는다. 또 잔디면에 요철이 있는 경우는 노면수정을 감안하면서 행한다.

□ 브러싱 (brushing)

- ① 포복경과 뿌리 등을 절단함과 동시에 마른 줄기와 뿌리를 제거하고 갱신을 촉진하기 위해 rake나 fork 등으로 신중히 여러번 긁는다.
- ② 발생한 마른 줄기나 잎 등은 매일 지정장소에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 통기작업 (aeration)

- ① 잔디토양의 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aeration 기구 또는 기계로 토양이 부드럽게 되도록 효과적으로 행한다.
- ② 구멍 및 cutting의 깊이, 간격 등은 담당직원과 협의한다.

□ 보식

- ① 보식장소는 크게 모양을 가지런하게 자르고 깊이 15cm 정도까지 상토를 교환한 후에 침하 방지를 위해 잘 전압한다.
- ② 땃장붙이기에 있어서는 가장자리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조성하여 전압하고 땃밭을 부리고 충분히 관수한다.

다. 식재지 관리

1) 수목 손질

□ 전정의 종류

- 기본전정은 수형의 골격만들기를 목적으로 하는데 주로 동계전정에 적용하고 수

종의 특성에 따라 가장 적절한 전정방법으로 행한다.

- 가벼운 전정은 수관의 정리에 의한 고사지의 발생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주로 하계 전정에 적용하고 자르기, 가지치기 등을 행한다.

□ 주로 전정해야 할 가지

- 마른가지
- 생장을 멈춘 약한 가지(약소지)
- 현저히 병충해에 걸린 가지(병충해지)
- 통풍, 채광, 가선, 사람, 자동차의 통행 등에 장애가 되는 가지(장애지)
- 절손에 의해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가지(위험지)
- 수관, 수형, 생육상 불필요한 가지

□ 전정의 방법

○ 일반사항

- ① 공원수목은 특히 수경상 규격형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연형으로 한다.
- ② 부정아의 발생원인이 되는 몸통자르기 등은 원칙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 ③ 아랫가지의 고사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윗부분을 강하게 아랫부분은 약하게 전정한다.
- ④ 큰가지의 전정은 절단부위의 표피가 벗겨지지 않도록 절단 예정장소 수 10cm 위를 미리 자르고 가지 앞부분의 중량은 가볍게 한 후 자른다. 또 큰가지의 절단면은 필요에 따라서 담당직원의 지시에 방부처리한다.

○ 가지줄이기

- 주로 신생지를 수관의 크기가 바르게 되는 길이로 정아바로 위의 위치에서 전정한다. 이 경우 정아는 그 방향이 수관을 만드는데 어울리는 가지로 될 수 있는 방향의 아로 한다.(원칙으로 외아, 버드나무 등은 내아)

○ 가지치기

- 수관바깥으로 튀어나온 가지의 절취 및 수세를 회복하기 위해 수관을 적게 하는 경우 등에 행한다. 전정은 적절한 분기점에서 긴방향의 가지를 기부에서 절취한다. 골격지로 되어 있는 마른가지 및 오래된 가지를 자를 경우는 후계지로 되는 잔가지, 또는 신생지의 발생장소를 보아서 그 부분에서 선단의 큰가지를 자른다.

○ 가지숙기 전정

- 지나치게 과밀한 가지를 숙아내기 위하여 수관의 형태구성상 불필요한 가지 등

은 기부에서 자른다.

□ 관목의 손질

- 수목의 특성에 따라서 가지줄이기, 솎아베기, 마른가지의 제거 등을 행한다. 그 외는 수목손질에 준한다.

□ 생울타리 손질

- (1) 불필요지, 도장지 등을 전정하여 가지의 정리를 행한 후, 일정한 폭을 정해서 양면을 베어내고 상부를 가지런히 한다.
- (2) 지엽이 성긴부분에는 필요에 따라서 가지의 유인을 행한다. 가지의 결속에는 삼끈 등을 사용한다.
- (3) 첫번째의 깎기를 할 때 단번에 자르지 않고 여러번 깎기를 통해서 서서히 형태를 만들어 나간다. 특히, 노송나무 화백나무 같이 부정아의 어려운 것은 주의깊게 행한다.
- (4) 생울타리의 높이와 폭의 관계는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수종 및 생육의 정도에 따라 이 표와 다른 경우는 담당직원과 협의해서 정한다.
  - 생울타리의 높이와 폭과의 관계(cm)

높이	30	60	100	120	180	250
폭	20-30	30-40	40-50	50-60	60-70	70-80

□ 원형만들기

- (1) 가지가 밀생한 부분은 솎아내기를 행한다. 수형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관주위의 잔가지로 윤곽선을 만들면서 베어낸다.
- (2) 아랫가지의 착생이 중요한 수형은 윗가지를 강하게, 아랫가지를 약하게 자른다. 또 침엽수에 대해서는 맹아력을 손상하지 않도록 수종의 특성에 따라서 충분히 주의하면서 적아 등을 행한다.
- (3) 대군식지는 각 수종의 생육상태에 따라서 수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자른다. 또 식재지내에 들어서서 작업하는 경우는 노압부분의 가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완료후는 가지를 원상태로 한다.

□ 화목손질

- 화목류는 화아의 분화시기와 착생위치에 주의해서 손질을 행한다.

□ 시비

- (1) 정해진 시비량을 비료, 시비의 종류(기비, 추비 등) 및 각 수목의 특성에 따라서 가장 효과가 기대되는 시비방법에 따라서 담당직원과 협의한다.

(2) 고목 시비

- 수목주간을 중심으로 수관외주선의 지상투영부분에 깊이 20cm 내외의 구덩이를 윤상으로 파고 구덩이에 소정의 비료를 골고루 덮는다. 구덩이를 팔 때 잔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는 뿌리가 밀생한 경우는 그 외측에 도랑을 판다.

○ 방사형 시비

- 수목주간에서 넓게 방사상으로 멀리 떨어짐에 따라 폭을 넓게 하는 동시에 깊게 도랑을 파고 구덩이에 소정의 비료를 넣고 복토한다. 구덩이의 깊이는 20cm 내외, 길이는 수관의 1/3 내외로 하고 구덩이의 중심부분이 수관외주선하에 가도록 판다.

○ 점상 시비

- 수목주간을 중심으로 수관외주선의 지상투영부분에 점상으로 만든 구덩이를 파고(표준 6개소) 소정의 비료를 넣고 덮는다. 구덩이의 깊이는 20cm 내외로 한다.
- 이식후 1년 이내의 수목 및 전정직후의 수목으로 수관외주선을 알수 없는 수목에 대해서는 구덩이의 중심선이 수관중심에서 근원직경의 5배의 위치로 하여 판다.

(3) 생울타리 시비

- 기비는 생울타리의 양측에 만든 구덩이를 1개소씩 계 2개소를 1본마다 파고 소정의 비료를 넣고 덮는다. 구덩이 깊이는 20cm 내외로 한다.
- 추비는 생울타리의 양측에 평행으로 깊이 20cm 내외의 구덩이를 파고 소정의 비료를 넣고 덮는다. 수세의 강약에 따라 시비량을 증감한다.

(4) 저목 시비

- 1본 및 소규모 군식인 경우
  - 방사상 시비, 점상 시비를 주로하고 그 방법은 고목시비에 준한다. 단, 구덩이의 깊이는 20cm 내외로 한다.
- 열식의 경우
  - 생울타리 시비에 준한다.
- 군식·대규모군식의 경우
  -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는 1㎡당 3개소의 구덩이를 파고 소정의 비료를 넣고 덮는다. 화학비료에 대해서는 식재지내에 균일하게 뿌린다.

□ 제초

- ① 기존식물을 상하지 않게 제초 fork 등을 사용하여 뿌리까지 파낸다.

② 제거한 잡초는 매일 지정장소에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동시에 제조 흔적을 깨끗이 청소한다.

□ 제초제 살포

○ 제초제 살포에 준한다.

□ 수목관수

- (1) 관수 : 엽면상의 분진 등을 씻어낼 수 있도록 전·후면을 끌고루 물을 뿌린다.
- (2) 지표관수 : 근원경의 4배를 직경으로 깊이 15cm 내외의 관수두둑을 만들어서 지정량을 관수한다.
- (3) 지표관수 : 주간주변에 관수용의 구멍으로 관수를 행한다. 물은 지정량을 구멍에 여러번 나누어서 관수한다.

□ 지주목교

- (1) 원래의 지주목 및 침목을 떼는 일은 수목을 손상치 않도록 하여 완전하게 제거한다. 또 삼나무 껍질, 삼끈, 아연칠선 및 주간감기재료도 깨끗이 제거한다.
- (2) 지주목을 다시 세우는데 있어서 표준시방서의 보호 및 양생에 준해서 행한다.

□ 결손손질

○ 원래의 삼나무껍질, 삼끈 아연도칠선은 수목을 손상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제거하고,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수간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삼나무 껍질등의 보호재를 감고 삼끈 등으로 결속한다.

□ 고손목 처리

- (1) 고손목의 별체에 있어서는 주변 수목, 시설물 등을 손상치 않도록 주의 깊게 행한다. 또 주위의 잔디 등은 필요에 따라서 sheet를 덮는 등 보호처리를 행한다.
- (2) 꺾어진 포기는 지체부부터 절제한다.
- (3) 별체한 수목은 가지를 제거하고 일정의 길이로 절단한 후 지정장소에 처리하는 동시에 주위를 깨끗이 청소한다.

□ 거적감기

- (1) 거적감기를 하고 떼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시행할 것.
- (2) 거적감기의 위치는 지상고 1.5m 내외로 하고 밑에 가지가 있는 경우는 아랫가지에도 감는다.
- (3) 지주목이 있는 경우는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보다 상부에 감는다.
- (4) 거적감기는 수간에 거적을 감고 그 위를 새끼 등으로 2개소를 결속한다.
- (5) 떼어낼 때는 해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 깊게 행한다. 떼어낸 후에 수간에 불

어있는 해충을 제거하고 떼어낸 거적과 함께 지정장소에 모으고 조속히 소각한다.

(6) 떼어낸 부분에 살충제를 도포 또는 살포한다.

다. 화단처리

□ 재료일반

○ 꽃모종은 발육양호한 것으로 병충해의 침입이 없는 것으로 하고 미리 이식에 견디도록 재배되어 잔뿌리가 많이 발생해있고 도장하지 않은 가지런한 모양의 것을 사용한다. 구근은 보다 충실하고 상처가 없고 마른 뿌리 병충해가 침입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 땅고르기

- (1) 마른뿌리, 잡초 등은 뿌리를 파헤쳐 흙을 털고 지정장소에 운반처리한다.
- (2) 화단면은 상토를 삼 등으로 30cm 정도까지 잘 뒤집은 후 큰 덩어리와 쓰레기를 없애고 요철이 없도록 고르게 한다.
- (3) 비료를 뿌리는 경우에는 지정의 시비량을 화단면에 균일하게 뿌리고 팽이, rake 등으로 상토와 잘 혼합한다.

□ 이식

- (1) 이식은 담당직원이 지시하는 디자인에 따르고 화단면에 미리 끈, 또는 석회 등으로 디자인을 하여 소정의 모종수를 밀도가 고르도록 하여 정성껏 이식한다.
- (2) 이식후에는 잘 관수하고 기울거나 뿌리가 노출되는 등의 것은 고쳐 심는다.

□ 제초·관수

- (1) 제초 및 관수는 기후, 토양상태에 주의하여 낭비하지 않도록 하고 더구나 시기를 잃지 않도록 담당직원과 긴밀히 연락하여 행한다.
- (2) 제초는 꽃모양을 다치지 않도록 제초 fork 등으로 잡초만을 뿌리부터 뽑아낸다. 이때 꽃모종의 뿌리가 노출되면 고쳐 심는다.
- (3) 관수는 꽃모종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서 행하고 충분히 관수한다.

□ 시비

- (1) 기비는 화단면에 지정의 시비량을 균일히 뿌리고 팽이, 삽 등으로 상토와 잘 혼합한다.
- (2) 추비는 비료의 종류 및 식물의 생육상태에 따라 담당직원과 협의한 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한다.

□ 기타

- (1) 화단가장자리 및 수경용 저목·화목 등을 제3절 식재지관리의 제손질에 준해서 행한다.
- (2) 화단내의 잔디관리에 대해서는 제2부 잔디관리에 준해서 행한다.

라. 청소·풀베기

□ 원지·잔디청소

- (1) 원로, 원지, 재떨이, 쓰레기통 및 그 주위의 쓰레기를 흩어지지 않도록 깨끗이 모으고 지정 장소에 운반처리 한다.
- (2) L형 하수구, 맨홀구멍에 쌓인 쓰레기, 토사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배수를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 (3) 자갈길은 쓰레기 등을 치운후 통행자에 의해 양측에 흩어진 자갈을 빗자루나 갈구리 등으로 중앙으로 모으고 균일하게 고른다.
- (4) 원지 잔디청소에 의해 발생한 마른잎 등은 쓰레기와 분리하여 가능한 식재지 내에 환원하도록 노력한다.
- (5)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로 분리하는 경우는 각각 확실히 구분하여 지정장소에 모은다.
- (6) 지정장소에 모은 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는 해충구제를 위해 적당한 약제살포를 지시하는 것이 좋다.

□ 식재지 청소

- (1) 특히 전면청소나 필요한 장소 이외는 낙엽, 가는가지 등은 되도록 그대로 퇴적시켜 흩어 환원시키도록 노력한다. 쓰레기 빈깡통은 한개, 한개 주워서 지정장소에 운반한다.
- (2) 저목내의 쓰레기 등은 저목류를 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제거한다.
- (3) 기타, 원지잔디청소에 준한다.

□ 풀베기

- (1) 수목, 관목, 울타리 등을 손상치 않도록 주의하여 균일하게 베어낸다. 또 베어내기 높이는 담당직원과 협의한다.
- (2) 수목, 관목, 울타리 등의 주변도 베어낸 흔적이 없도록 제거한다. 또 이들이 엉켜져 있는 덩굴성 잡초도 깨끗이 제거한다.

- (3) 베어낸 풀은 매일 지정장소에 모으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동시에 베어낸 흔적을 깨끗이 청소한다.

마. 시설물 유지관리

□ 포장관리

- (1) 공원내의 산책로 보도 등이 각각의 해당기능을 갖거나 복합 용도기능을 포장도로로 대상으로 한다.
- (2) 토사포장 관리
  - 가뭄으로 흩먼지 발생시 살수를 하여 먼지를 억제한다,
  - 비온뒤 생긴 요철부는 배수가 잘 되는 모래, 자갈로 채워 잘다지되 노면이 심하게 요철시는 근본적인 정비를 실시한다,
  - 노면의 횡단경사를 3-5%로 유지하고 노면의 지표수가 고여있을 때는 신속히 배제하여 노면의 안정을 기한다.
  - 겨울에 얼었던 노면이 해토 될 때는 모래 등을 포설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한다.
- (3)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관리
  - 파손된 부분을 사각형 수직으로 파내고 보수한다.
  - 균열된 부분은 침투식 공법등을 사용하여 보수한다.
  - 국부적으로 침하된 곳은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보수하여 담당자와 사전 협의한다.
  - 공원이용자에게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곳은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블록포장 관리
  - 블록포장요철, 블록과의 단차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즉시 표준시방서에 의거 보수하여야 한다.
  -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사용한다.

□ 배수관리

- (1) 배수로 및 맨홀에 토사나 낙엽등 찌꺼기가 쌓여 물빠짐이 방해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하고 특히 태풍철 해빙기전에는 반듯이 청소 및 점검을 실시한다.
- (2) 집수구가 솟아 올라서 물이 유입되지 않게 될 때에는 주위 지반을 토사로 높여

나 집수구를 절단하여 낮추어 준다.

- (3) 집수구 및 맨홀이 솟아 올라있거나 움푹들어갈 있을 때에는 통행에 위험함으로 즉시 조정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4) 맨홀, 집수정 뚜껑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는 위험함으로 즉시 위험표지판 및 울타리를 설치하고 교체 또는 보수한다.
- (5) 기타 배수시설 관리는 관련 지침 등에 의하여 관리한다.

#### □ 비탈면, 옹벽, 석축 등

- (1)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조기에 변화상태를 발견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 □ 편익 및 운동시설물의 관리

- (1) 벤치, 파고라, 야외탁자 등은 1일 1회이상 물걸레로 닦아야 한다.
- (2) 바닥에 물이 고인 경우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을 포장한다.
- (3) 각종시설물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돌림 방지 용접을 한다.
- (4) 파손된 시설물은 즉시 부분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 (5) 파고라 등에 식재된 만경류 가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수시로 정리작업을 실시한다.
- (6) 시설물의 목재가 갈라졌을 때는 빠대를 빈틈없이 바르고 건조시킨후 목부와 빠대를 바른부분이 일치하도록 사포로 문지르고 마무리한다.
- (7) 목재등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페인트, 바니시칠 등 도장처리를 하여야 하며,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8) 콘크리트 제품, 철재 제품등의 손상시에는 관련 서적의 보수 방법에 의한다.

#### □ 휴지통 관리

- (1) 쓰레기 수거빈도는 매일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2) 쓰레기 수거는 재활용품 선별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 (3) 쓰레기통 내.외를 수시로 세척, 도장을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4) 쓰레기통의 접합부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경우 충분히 조이며 파손시는 즉시 보수한다.

#### □ 음수대

- (1) 배수구가 모래, 낙엽, 오물 등에 의해 막히고 오수가 넘칠 경우 불결하게 되므로 막히지 않게 제거한다.

- (2) 음수대 받침은 불결해지기 쉬으므로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파손시는 즉시 보수한다.

#### □ 공원등 관리

- (1) 공원등이 미점등 되지 않게 수시로 확인하고 미점등시 즉시 보수한다.
- (2) 공원등의 각종 전선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3) 공원등 및 각종 조명기구를 수시로 도색 및 청소작업을 실시한다.
- (4) 수목성장이나 시설물에 의하여 조도저하가 발생할시는 수목전정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 표지판 관리

- (1) 포장이 퇴색된 곳은 재포장한다.
- (2) 비가 그친 다음에 표지판 등 각종시설물에 묻은 흙등 이물질들을 곧바로 닦아낸다.
- (3) 소정의 방향을 향하여 있지않은 것은 바로잡고 넘어졌거나 넘어지려고 하는 것은 바로잡는다.

#### □ 유희시설의 관리

- (1) 1일1회 이상 유희시설 점검기준에 의거 점검을 실시 관리한다.
- (2) 사용재료에 균열발생 등의 파손 우려가 있거나 파손된 시설물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 조치한다.
- (3) 파손된 시설물은 즉시 보수하여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 (4) 모래사장은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입자가 굵은 모래를 깔고 물이 고이는 곳이 없도록 한다.

#### □ 수질 관리

- (1) 음료 주변을 1일1회 이상 순찰 청소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 (2) 수질검사 결과표를 매일 부착하고 게시된 관리를 깨끗이 한다.

#### □ 화장실 관리

- (1) 각 화장실별로 점검일지를 작성 비치한다.
- (2) 1일1회 이상 점검기준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미흡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한다.
  - 시설물의 훼손 및 휴지, 비누, 수건, 휴지통 등의 비치여부
  - 주변환경 및 청소상태
  - 소독실시(주 2회이상)

- 관리인 별도 지정 등

(3) 동절기 동파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조치한다.

□ 기타사항

(1) 본 해남추모공원관리 표준메뉴얼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조경관리학 및 국토해양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한다.

<참 고 문 헌>

- 김수봉 외 공저(2007). 『장사문화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계획 수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수봉 외(2011).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사등에 관한 법령집(2016) 보건복지부
- 장사업무안내(2016), 보건복지부
- 이필도(2017), 『수원시장사시설 지역수급에 관한 연구』,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수원시
- 이필도(2016), 『광주광역시립장례식장 건립 타당성 검토 연구』,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광주광역시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015년 청소년 수련시설 통계편람』